

第156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1年11月7日(木)

場 所 參議院會議室

議事日程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案件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1面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1面

(14時7分 開議)

○委員長 金瑑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니다.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委員長 金瑑泰 議事日程 第1項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議事日程 第2項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이상 두 件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政府側에 대한 質疑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起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彬委員 民主自由黨所屬 濟州道 北濟州郡 出身 李起彬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國務委員 여러분!

(金瑑泰委員長, 洪熙杓幹事와 司會交代)

本委員은 오늘 1990年度 政府의 財政運用的 結果인 決算을 審議함에 있어 決算의 各 部門別로 具體的인 問題點을 지적하기에 앞서 먼저 90年度 財政運用的 背景이 되었던 당시의 內外現實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의 世界는 政治的으로는 파리 憲章의 채택과 獨逸의 統一 그리고 東歐圈의 붕괴 등 脫冷戰의 해빙기를 맞았으나 經濟的으로는 심각한 貿易不均衡으로 地域保護主義 색채가 짙어지는 가운데 우루과이라운드協商마저 매우 불안한 실정입니다.

한편 國內的으로는 脫冷戰 무드와 함께 韓蘇修交, 南北總理會談의 成事, 그리고 各 部門에서의 民主化의 추진 등 가시적인 여러 성과가 있는 반면 社會기강의 해이와 階層間·地域間·部門間的 갈등과 불균형의 시정욕구가 확산되는 등 多事多難한 한 해였습니다.

90年度중 우리 經濟는 消費와 投資 등 內需主導의 성장과정에서 18.8%라는 높은 經濟成長率을 이룩하였으나 經常收支는 黑字 4年 만에 21億弗의 赤字로 반전되었고 國民生活과 직결이 되는 物價不安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對外的으로는 中東戰 勃發로 油價不安을 초래하는가 하면 對內的으로는 65年만의 水害被害와 證市沈滯, 金利不安定, 物價 오름세의 확대 등 우리 經濟의 構造的문제점과 더불어 그동안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輸出이 技術開發 노력의 소홀과 근로의욕의 감퇴, 産業構造調整努力的 부족과 建設 서비스産業 등의 異狀肥大化와 過消費 현상의 만연 등으로 우리 經濟의 성장 잠재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90年度중 物價는 昨年末 對比 都賣는 7.3% 消費者는 9.4%나 상승하여 81年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政府의 무리한 新都市建設 등 建築性 過熱로 인한 建資材價格 급등, 技術人力難과 農水産物의 가격양등 및 政府 主導의 公共料金 引上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中小企業은 先進國의 개방압력과 결프

事態에 따른 油價上昇 등 對外與件의 악화와 對內的으로는 人力·物價·資金難 등의 3重苦로 극심한 經營上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1990年度의 對外的 與件과 관련하여 本委員은 政府의 政策推進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政府가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등에서 中·長期的인 經濟運用方向을 설정해 놓고도 실제 該當年度의 經濟運用計劃에서는 이를 도의시한 채로 運用함으로써 長期的 목표로서 기능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第6次 5個年計劃에서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安定基盤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計劃期間중 대대적인 景氣活性化 對策을 펴으로써 低物價 安定成長構造가 高物價 過熱成長構造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실례로 88年7月 수립한 第6次計劃에서 87년에 12%에 달했던 經濟成長率은 88년에는 10%, 89년에는 8%, 90년에는 7.5%로 每年 下向調整하기로 하고서도 89년에는 勞使紛糾 등으로 성장률이 6.4% 떨어지자 이듬해 金利引下, 政策金融擴大, 建設景氣活性化 등의 강력한 景氣浮揚策을 펴으로써 90年度의 성장률이 9% 수준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으나 이로 인하여 成長構造를 왜곡시키고 長期的인 産業構造調整을 그만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6次計劃에서 제시했던 金融實名制의 도입, 首都圈內 工團施設抑制, 輸入先 多邊化品目の 단계적 폐지, 輸出金融縮小, 競爭力 弱化部門의 業種轉換, 社會間接資本擴充 등 産業 및 金融構造改編問題가 7次計劃으로 이월된 것 등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바로 경제팀이 수시로 바뀌었고 한결같이 中·長期的인 과제보다는 在任 期間중의 업적만을 의식한 實績主義的 經濟運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政府의 의지로 정해진 長期政策基調는 모든 經濟主體들이 經濟活動의 기준으로 삼는 이정표인 만큼 특별한 예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政府의 經濟豫測能力의 부족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8年이후 3年間 연속 3兆원 이상의 歲計剩餘金이 발생해 왔는데 이는 그동안 經濟安定을 위한 財政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財政規模가 억제된 면도 없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政府의 稅收의 전망이 실적과 엄청난 괴리를 가져오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괴리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稅收推計의 기본적인 전제인 經濟成長·換率·輸入規模 등의 전망실적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數年間의 전망과 실적을 비교해보면 87年은 10.7% 성장전망에 17% 성장, 88年은 10.7% 전망에 19.1% 성장, 89年은 11.8%전망에 12.3%, 90年은 11.3% 전망에 18.8% 성장 그리고 今年은 12.9%의 성장을 전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7.4%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今年度 第2回 追更에서 이미 사용한 稅收超過豫想分 1兆5,878億원에 대하여 1兆원 내외의 追加稅收發生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政府의 각종 經濟指標展望도 國內外 經濟與件의 가변성, 전망기법상의 한계 등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정도의 오차는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政府의 經濟豫測能力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經濟成長率 이외에도 政府는 今年에 經常收支赤字를 30億달러 전망하였지만 이미 100億달러가 넘는 큰폭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消費者物價도 이미 9月末 현재로 8.9% 오르는 등 여러 부문에서 政府의 經濟指標展望이 현실과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政府의 經濟指標豫測과 실적과의 괴리는 政府에 대한 國民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물론 企業, 家計 등 民間部門의 의사결정에도 혼란을 가져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政府의 經濟展望이 國家經濟運用의 척도가 되고 民間의 經濟活動에 중요한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副總理께서는 이와 같은 政府의 經濟指標展望과 실적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歲計剩餘金水準의 豫算規模의 비현실화로 인한 社會間接施設擴充 등 財政需要 충족시키기 지연과 財源배분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經濟的 損失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特別會計設置目的에 반하는 豫算編成과 執行에 관한 문제입니다. 司法施設 등 特別會計는 司法施設등造成法에 의하여 法院·法務·警察施設의 설치 관리와 장비취득에 소요되는 經費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大法院의 登記所 新築·增築費 등 每年 一般會計에서 편성 운용하고 있으며 警察官署 新築費는 司法施設 特別會計所管임에도 그 所要額 일부를 一般會計에 計上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司法施設 등 特別會計의 財源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와 관련하여 同會計의 主 財源인 一般會計와 轉入金의 算定 方法에 있어 法條文 解釋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司法施設등造成法 第2條에는 罰科金 및 沒收金 收入額의 60%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法令 또는 行政處分에 의하여 實現된 歲入收納額의 實績을 意味하는 것으로 法規上 精算規定이 없더라도 당연히 精算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豫算을 基準으로 轉入金を 算定함으로써 超過收納額의 配分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副總理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複數年度에 걸치는 契約에 관한 事項입니다.

豫算會計法에 인정하고 있는 長期繼續契約對象事業을 제외하고는 豫算會計法상의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과 單年度豫算主義原則에 의하여 當該年度內에서만 執行이 가능하며 執行의 前提가 되는 支出原因行爲 역시 앞서 말씀드린 豫算會計法의 規定에 따라 年度內에 執行이 가능한 事項에 限定되어야 함에도 大法院의 登記所 新築 등 거의 全所管에 걸쳐 年度末에 支出의 原因이 되는 契約행위를 複數年度

에 걸쳐 執行함으로써 豫算會計法에 違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財源의 效率的인 使用이나 財政運用上 配定의 時期 등 불가피한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문제는 現行法을 違反한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副總理께서는 이와같은 制度와 現實運營의 괴리를 防止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豫算의 變更使用에 관한 問題입니다. 豫算은 現實的으로 編成 確定時點과 執行時點의 차이에 따라 經濟與件의 變化 등으로 財政의 新축적인 運用을 위하여 移·轉用 豫備費 使用 등 一部 豫算의 變更使用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90年度의 경우 發生豫算額 27兆4,557億원에 대하여 前年度 移越額 8,148億원 豫備費 使用額 5,199億원 移·轉用額 3,526億원 등 合計 1兆7,236億원이 豫算成立後 政府의 執行過程에서 關係法令에 의해 豫算現額으로 運用된 規模입니다. 이와같은 豫算規模의 6.3%에 해당하는 막대한 規模의 豫算이 國會가 當初議決해 준 目的과 金額外로 變更 運用되는 根本的인 이유는 年度中의 與件變化도 그 原因이 되겠습니까마는 當初의 豫算編成이 정밀하지 못하거나 年度執行이 불가능함에도 財源確保의 目的으로 追更을 編成 運用하는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까.

豫算의 執行은 政府가 國會에서 議決해 준 目的과 金額의 범위내에서 運用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무리 豫算會計法 등 關聯法令에서 例外的인 制度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는 것은 결국 國會의 豫算審議確定權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副總理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財務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副總理께 質疑한 歲計剩餘金發生과 관련하여 歲計剩餘金 發生의 主原因은 稅收超過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稅收推計의 正確度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長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決算의 正確性에 관한 問題입니다. 決算은 豫算의 執行實績으로서 그 總額이나 個別內容 모두가 正確하고 關聯內容이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0年度 決算의 경우 財務部 國稅廳 및 關稅廳의 歲入決算은 政府豫算의 收納額과 韓國銀行 計算證明額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法律上 설치되는 되어 있으나 豫算이 성립되지 않는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에 대한 歲入決算 등 不正確한 決算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수고했습니다.

○蔡映錫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예. 말씀하세요.

○蔡映錫委員 오늘 지금 우리 豫決特委에서 이틀째 90年度 決算에 관한 검사 決算審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는 잘아시다시피 90年度 우리나라 살림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에다가 제대로 썼는지를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審議를 하고 있는데 與野委員들께서 나름대로 그 어려운 豫算書類를 뒤적여 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문제점을 모두 提示를 하고 있고 진지하게 國政審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저께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틀째 審議되는 오늘 이 시각까지 國政의 總括責任을 맡고 계시는 國務總理께서 자리하시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國會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경시하시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유감스럽고 또 委員長은 이러한 말하자면 國務委員들이 決算이나 豫算에 당연히 出席을 하셔서 어저께 委員長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國政의 가장 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1년에 한번 있는 豫算決算의 審議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과거에 관행이었다면 이런 관행은 앞으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조금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軍事文化의 잔재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또하나 우리 國會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

해서 議員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13代는 여러가지 國會議員들에 대한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13代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定期會 豫算審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이 자리에는 당연히 지금 자리하고 계시야 할 분이 國務總理 말고도 大法院長을 대신해서 지금 行政處長 나와계시는 줄로 알고 있고 監查院長하고 副總理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決算檢査를 받아야 할 大統領秘書室長도 나와 계시야 하고 大統領警護室長도 나와 계시야 합니다. 두 분 다 만나오시고 또 一般會計 支出에 대한 決算을 받기 위해서 國家安全企劃部長도 나와 계시야 합니다.

그것이 國會의 위상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다 만나와 계십니다. 만나와 계시고 만나오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이 관행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委員長께서는 지금 委員들이 앞으로 靑瓦臺나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決算에 대한 質疑를 지금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때 어떻게 答辯을 하게 하실는지 걱정이 되어서 委員長께 이것을 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委員長께서 좀 풀어 주셔야겠고 만약에 저도 언제 質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來日이나 質疑를 하게 되면 國家安全企劃部나 靑瓦臺에 대한 質疑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委員長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國政의 가장 중요한 일이 豫算決算 審議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도 하셨는데 國務委員들께서 答辯이 끝나시면 자리를 뜨고 가십니다.

또 아예 가만이 듣다가 委員들 質疑가 끝난 뒤에 該當答辯이 없는 國務委員은 일찍감치 그냥 돌아가서 버리면 나중에는 한 분 남아 가지고 우리가 國政審議해야 한다는 결과 가 됩니다. 答辯 끝나고 맨 마지막 答辯 하시는 분 한 분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委員長께 우리 特別委員會의 運營의 妙를 기해 달라고 상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事務處에서 國務委員들 어느 분이 出席하시고 어느 분이 出席 안하셨는지 잘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國會事

務處의 總長 나와 계시는데 우리 委員들은 지금 이름이各自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監査院長, 副總理들은 새겨놓고 法院行政處長이랑 새겨놓고서 國務委員들은 그냥 國務委員 國務委員 했습니다. 國務委員도 체면을 차려드려야 합니다. 國會議員 해놓으면 그냥 國會議員 다 앉아서 하는 것과 똑같은데 왜 國會議員은 個別的으로 名牌를 붙여놓았는데 國務委員들은 왜 그냥 國務委員 國務委員... 어떤 國務委員, 무슨 擔當 國務委員인지 알아야 하니까 長官들 그 政府組織 法 序列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고 계시는 勞動部長官 이렇게 딱 써서 名牌를 붙여주셔야지 勞動部長官이 텔레비전에 비치더라도 아! 勞動部長官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國民이... 친숙할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國務委員이라고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事務處에서는 말이지요, 어저께 내가 얘기들이니까 어느 長官... 얼굴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名牌 써놓으면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채근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나 하나 무얼 바로 잡아갑시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委員長께서는 委員들께서 혹시 靑瓦臺나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質疑가 있으실 경우에 어떻게 答辯을 하게 하실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委員會를 內實있게 운영해 주시도록 議事進行으로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잘 알겠습니다. 蔡映錫委員께서 몇가지 議事進行의 말씀이 있었기에 委員長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議事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國務委員 出席問題는 상당히 어저께 주의를 환기시킨 이후에 成績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法院行政處長은 나오셨는데 아마 잠시 離席이 된 것으로 압니다.

大統領秘書室長·警護室長 出席問題는 法上으로는 自進 出席形式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慣例上 決算委員會에 參席한 例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專門委員에게 사실을 확인을 시켜본 結果도 그러한 例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國政運營에 있어서 그것이 效率의이고 國家에 利益을 가져올 수 있

는 일이라면 우리 國會에서 諸般 規定을 改正해서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現行에서는 지금 진행중에 그것을 履行하기는 썩 어렵지 않나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하나는 國務委員...
(「委員長님!」하는 委員 있음)
잠깐 제세요. 委員長도 議事進行을 책임져야 할 義務가 있습니다.

다음에 國務委員 離席問題는 제가 委員長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혹 委員님들의 質疑가 다 끝났다 하더라도 또 該當長官에게 質疑가 없다고 하더라도 離席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피한 國務에 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을 促求하면서 다음 議事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實委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映錫委員 靑瓦臺所管 答辯은 누가해요?

○委員長代理 洪熙杓 그것은 答辯드리겠습니다. 經濟總括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이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實委員 서울 銅雀區出身 民主黨所屬 朴實委員입니다.

國會가 豫算과 決算을 審議할 때마다 여러 가지 限界를 느낍니다.

本委員도 다른 委員님들과 다름없이 山積한 그것도 엇그제 도착한 案件, 資料들을 펼쳐 보면서 정말로 내가 偉大하다, 大韓民國 國會議員들 정말 偉大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 도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내고 있어요. 會議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制度的인 문제가 많습니다. 矛盾이 많고 또 委員長에게 同僚委員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이 豫算과 決算을 審議할 때 그나마 몇 분 안되는 國會 補助機關도 제대로 機能을 할 수 있도록 좀 써먹을 수 있도록, 밥값을 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豫算案 審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決算이요 사실 이것 政治的 책임밖에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決算報告가 아니고 決算案이 되었으면 되겠어요. 좀 따져가지고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形式的으로 적당주의로는 못 할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누적된 것인데, 얼마나 가관이나 하면 同僚委員이고 지금 運營을 책임받고 있는 우리 委員長께서 말씀하시기를 靑瓦臺 安企部 나올 수 없다,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專門委員이 어제께 檢討報告에서 지적한 대로 豫算도 없이 決算을 報告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靑瓦臺 情報部, 요즘은 安全企劃部입니다. 거기는 豫算 안쓰는 곳입니까? 豫算 쓴 때는 決算報告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副總理가 安企部까지 다 합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있잖아요? 60年代부터 지금까지의 잔존해 있는 가장 惡法중의 惡法이에요. 30年, 한 世代 동안 버티고 있는 것이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입니다. 이것 總括主義...

또 이것 보면은 企劃院長官이 대신해 가지고 豫備費 사용신청하고 또 企劃院에서 또 의결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어 맞는 것은 豫算長官인 副總理가 安企部 대신 매를 맞고 있어요. 安企部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것이 大韓民國 國會예요. 이것이 大韓民國 國政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國會議員이에요. 무엇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공에 대고 배아리치고 있어요? 이것을 당연시 한다 말이에요. 우리 民主黨側에서 議事進行 發言을 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靑瓦臺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어요. 또 安企部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 관례대로 제 감각으로 會議錄을 보았어요. 會議錄 뭘 보았느냐? 어제께 出席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 名單리스트를 보았어요. 없어요. 靑瓦臺 安企部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올라 가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시의적절하게 우리 蔡映錫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 돈 쓴 사람이 와서 答辯을 해야지 돈도 안 쓴 사람 會計報告받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어요? 또 決算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것 會計監査만이 아니예요. 또 職務監査만도 아닙니다. 政治的 監査예요. 무엇 報告 받으면 經濟企劃院長官 副總理가 靑瓦臺나 安企部에 대해서 뭘 어떻게 答辯합니까?

이것 안돼요. 이것 是正해야 돼요. 그래서 기왕지사라 하더라도 우리가 決算審議하는 그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政治的 추궁해야 돼요. 물론 13代 國會의 마지막 會期입니다. 앞으로 3·4個月後에는 國民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1年後에는 총체적인 政權에 대한 國民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決算...

어제께 참 여러 委員들께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決算, 豫備費承認 적당히 넘어 가서는 안된다, 적어도 우리 民主黨과 本委員의 각오는 그렇습니다.

尊敬하는 與黨委員들께서도 우리의 權威를 위해서 꼭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해내야 돼요. 이 特別法인가 뭐 없애버려야 돼요. 당장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것 政府에서 答辯받아 내거나 아니면 政府 與黨이 이것을 고치겠다는 確言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지금 이 法案이 13代 國會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계류중이에요. 이 廢棄法案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會期不繼續의 原則아 아니라 이번 13代 國會가 끝나면 모든 法案은 다 廢棄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代 國會의 명예를 위해서 이 惡法, 維新이래의 殘滓 代表的인 殘滓인 이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은 이번에 꼭 뜯어 고쳐야 되겠어요. 與黨委員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께 많은 委員들께서 대개 通常的으로 나오는 決算과 또 豫備費問題에 관해서 좋은 質問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重複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공부하는 자세로 몇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우리 豫算決算委員會에서 그래도 專門的인 지식을 가지고 豫算案과 決算을 檢討해 보는 사람들이 立法補助機關인 專門委員이나 審議官들의 檢討報告입니다. 그런데 이 檢討報告가 檢討報告로써 그쳤어요. 技術的이고 專門的인 지식을 발휘해서 檢討해서 지적한 사항이 그냥 지나쳤어요. 물론 그 내용이나 그 全般的인 문제가 委員님들의 政策質疑를 통해서 제시되고 또 부연되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간과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政府

에서 아무런 答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專門委員이 나옴대로 수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중에서 어저께 論及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장황하겠지만 一般豫算 一般會計部分 또 豫備費 支出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례스럽지만 各部處別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時間이 다소 걸릴 것입니다. 그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90年度는 우리 經濟의 轉換點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86년부터 이룩했던 經常收支 赤字가 5年만에 반전되어서 22億달러의 赤字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今年度에는 經常收支 赤字가 100億달러를 넘었습니다. 제가 今年初에 3月 臨時國會때 今年度 우리 貿易 우리 赤字가 100億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經濟를 잘 알아서 豫測해서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실지로 모든 國民이 걱정한 대로 100億달러가 훨씬 넘었어요. 108億 달러인가 얼마인가 新聞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런 昨年度의 經常收支 赤字 反轉은 3低現象의 후퇴와 內需 호조에 따른 輸入 增加 등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90年 豫算編成과 운영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國際收支의 反轉現象이 100億달러가 넘는 赤字가 나왔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 經濟와 豫算을 책임지고 있는 副總理로서 90年 豫算 운영가운데에 經常收支 赤字反轉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지적하고 향후 豫算 運營 方向에 대한 對備策을 밝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部分的으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총괄해서 綜合的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政府 財政度의 건진도를 측정하는 指標인 綜合財政收支 赤字는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서 지적된 바도 있지만 90年度 1兆5,872億원으로 前年度의 191億 赤字에 비해 무려 83배나 확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專門家가 아닌 나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도 副總理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歲入超過 소위 歲計 剩餘金問題는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앞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

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政府가 追更을 전제로 해서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豫算을 擴大하려는 저의에서 해 온 그런 常套手段이다 하는 것도 앞에서 대개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또 잘 보아서 아까 李起彬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전망의 미숙이라든지 부족에서 왔다 하면 이것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國會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副總理께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 稅收推計를 의도적으로 縮小했으면 했다,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豫測을 제대로 못했으면 못했다 하는 견해를 다시 정리해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제 어떤 분이 零點 제로베이스 豫算制度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로베이스 豫算制度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한 革命政府 아니고는 어려울 거요. 대개 前年度 對比해서 그냥 增加하는 식으로 해 오는 것인데 의욕적으로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 해야 되고 아시는 대로 本豫算을 編成할 때는 政府의 政策意志나 投資 優先 順位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本豫算을 編成합니다. 그런데 追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豫算의 본래 취지에 대한 資源의 效果的인 配分이라든지 또 效率性 提高라든지 이런, 목적에서도 追更이라는 것은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無事安逸의인 고식적인 方法은 止揚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몰라서도 물어 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豫算編成 없는 決算을 報告했다 이런 專門委員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조금 내가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설명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실거예요. 專門委員이 지적한 것 처럼 土地管理및 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는 90年7月1일부터 施行토록 되어 있으나 90年 本豫算 및 追更豫算에서 豫算編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土地公概念管理法에 의해 징수한 歲入 2,000萬원을 特別會計 歲入으로 잡아 豫算도 없는 상황에서 決算이 발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는데 特別會計 設立 이전의 一般會計 歲入

으로 선호하는 것이 適正하다는 견해에 대한 長官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점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 또 이것도 專門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委員님들께서 質問中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指摘事項에 대해서 政府側 견해나 答辯없이 넘어 갈 것 같아서 제가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물어 봅니다. 收納과 決算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는 現行 決算制度를 도외시키고 內國稅의 收納은 國稅廳에서 關稅廳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고 國稅와 關稅의 決算은 財務部 所管으로 하는 등 收納과 決算을 일치 시키지 않는 制度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副總理와 財務部長官의 견해는 어떤지 이것을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國會 議決없는 項 이상의 不法科目新設에 대해서도 어저께 지적이 있었습니다. 豫算會計法上 項 이상의 豫算科目은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데도 불구하고 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項 이상의 歲入科目을 新設하여 歲入을 徵收한 歲入科目에 대한 合法的 處理對策은 무엇인가? 18個 部處에서 法定歲入科目 項 이상으로써 恣意的으로 科目을 任意로 新設한 것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具體的인 것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說明과 答辯이 있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不法轉·移用に 관한 문제입니다. 豫算總則 第8條에 정한 豫算의 移用可能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農地管理基金 및 農漁村發展基金은 移用對象經費가 될 수 없는데도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서 1,000億원을 農地管理基金으로 移用하고 農業機械化資金 700億원과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50億원을 農漁村發展基金으로 移用해 사실상 不法 移用된 1,750億원에 대한 合法的 處理對策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國會의 事前承認範圍內에서만 가능한 것인데도 이를 違反하는 것은 違法人 동시에 國會의 權限을 侵害하는 일로서 關聯者에 대한 依法處理가 있어야 된다. 國會의 權威를 위해서도 그렇고 三權分立의 憲法精神으로 보아서도...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副總理와 所管部處長官은 이런 不法 不當事項에 대해서 어떤 措置를 취했는지 하는 것을

18個 部處 長官들 다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어야 되겠어요. 이 18個 部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專門委員한테 물어보면 指摘事項이 있어요, 어떻게 處理했는가.

國會가 承認한 債務 이상으로 또 國家의 經費를 浪費한 것이 어저께 지적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國庫債務負擔行爲는 豫算會計法 第24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해 事項別로 國會의 議決을 얻은 金額의 범위내에서 債務를 負擔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外上契約을 다음에 해줄 테니까 이 정도하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外務部所管 在外公館國有化事業을 위해 債務負擔行爲로 計上된 362億원보다 많은 400億원을 執行하여 換差額으로 인한 追加負擔을, 換差額에 의한 追加負擔은 감안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있을 수 있지요. 그 뒤 國庫債務負擔行爲 자체가 그런 것이니까. 하더라도 그 限度額을 훨씬 초과해서 5億원에 가까운 金額을 執行했어요. 이것은 違法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責任糾明이 있어야 되겠고 또 어저께 專門委員이 지적한 대로 國庫債務負擔行爲는 國家機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大德研究團地에서 이러한 債務負擔行爲 20億원을 計上해서 不法的으로 豫算을 執行한 것 科學技術院에서 出捐金으로 大德研究團地에 넘어가 가지고 國庫債務負擔行爲로서 일을 하게 한 것 이것에 대한 政府側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綜合土地稅率에 관한 것입니다.

內務部가 90年度에 綜合土地稅制를 도입하면서 營業用 附屬土地에 대한 綜合稅率을 2%로 했다가 그때 國會에서 5%로 하자고 해 가지고 論難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 2%로 되었지요. 이렇게 2% 引下함으로써 地方稅의 主要稅源인 綜合稅의 稅收가 축소되었는데 이로 인한 90年度 稅收減少推定額은 얼마나 되며 地方財政自立度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說明이 있었으면 합니다.

課標 稅率, 이것 여러가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綜合稅에 대한 實效稅率... 1,600兆원 對 5,500億으로 나눈 것은 0.03% 水準인데 비해 美

國은 1% 實效稅率이 낮은 日本조차도 0.1% 이렇게 되어서 우리나라가 外國에 비해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課標 애기인데 國會에서 아무리 稅率을 정해주어도 行政府에서 課標造作하기에 따라서 稅金額數라든지 여러가지 波及效果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은 課標는 좀 現實的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稅收를 늘린다는 것보다도 應能負擔平衡租稅의 基本原則에 따라서 課標도 現實化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是正策 이에 대한 對策 견해를 좀 內務部長官 밝혀 주기 바랍니다.

豫算會計法 36條는 豫算의 目的外使用禁止와 豫算移替條項에 의해 豫算의 移用 및 移替를 原則的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豫算의 移用·移替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90年度 移用·移替額은 782億원으로 88年度의 320億원에 비해 2年만에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移用·移替額이 해마다 반복 확대되고 있는 것은 國會의 決算審議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우스워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副總理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國防部의 移用·移替額은 全體 移用·移替額의 32.4%인 253億원이나 됩니다. 물론 昨年에 政府組織改編으로 해서 公報部가... 文化公報部가 나누어져서 移替되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國防部에서 이렇게 많은 移用·移替額이 생기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른 同僚委員이 國防部의 外資購買에 관해서 質問한 것이 있습니다. 중복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外資購買計劃에 따른 折衷交易契約은 海外技術의 國內移轉 部品の 逆輸出 등 이런 것들을 위한 契約內容의 일부이므로 具體的인 內容을 確定한 후에 本契約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國防部 軍需本部는 訓練機外 5種의 物品을 購買하면서 折衷交易의 去來規模만 契約을 체결한 채 9,279萬달러를 先給金으로 支拂함으로써 國內業體의 先金을 最長 550日間 外國業體가 사용케 放置함으로써

外貨金利만으로도 1,000萬달러의 利益을 外國業體에 안겨주고 折衷交易契約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써 결국 많은 損失을 가져오고 契約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監査院 指摘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事案은 金錢的인 國家損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契約履行 遲延으로 國軍의 戰力強化日程에도 큰 차질을 가져오게 한 重大事案임에도 監査院이 굉장히 관대한 措置로서 지적을 하고 말았어요.

先給金 支給保留... 通報 이 정도로 그치고 말았는데 글썽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事案이 이 정도에서 그치는 지적사항인가, 왜 그 이상의 責任은 묻지 않았는지 國防部를 봐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550日間이라는 것도 숫자의 조작이다 이런 협의가 있습니다. 아마 法定時限이 550日인 모양이지요. 그것 딱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서로 봐주고 짜고 하는 監査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說明과 答辯을 바랍니다. 역시 軍首腦部 또 손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部分에 대해서 監査院에서 說明이 있어 주셔야 되겠고 國防部에서는 왜 이런 서툰 契約을 하는 責任者들을 自體問責하지 않았는가 또 했는가? 그 結果가 안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民願素地가 많은 徵發財産關係입니다.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해 債券을 발행하여 매수한 土地가 軍事上 필요없게 된 때에는 還買權者가 還買機會를 포기할 때까지 매각할 수 없는데도 還買請求訴訟이 제기중인 國有地 73필지, 이 所在은 모르겠어요. 監査院報告만 내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 法院審理中인데도 불구하고 國防部가 매각토록 승인하여 民願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被徵發者의 還買權行使를 침해하고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敗訴함에 따라서 被徵發者에게 元金은 물론 遲延損害金 4億4,000萬원을 지급하여 國庫損失을 초래케 한 사실이 監査院의 지적

을 받았는데 그 責任에 대한 問責結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結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年償還의 債券으로 일방적으로 징발해 쓰던 土地가 軍事上 필요없게 된 때에는 徵發時限에 관계없이 還買權者에게 돌려주는 것이 合理的인데도 불구하고 時價에 팔겠다는 것은 國防部가 權力을 이용해 民間의 財産權을 침해해 가면서 不動產投機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쓰고 債券으로 손실을 주었으면 되지 필요없이 줄 때는 元還買者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法律을 고쳤지요. 89年末인가... 물론 徵發財産整理特別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은 特別法을 制定해서 被徵發者인 民間人の 財産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法制定精神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被徵發者 還買權者에게 時價로 매각하도록 한 條項은 特別法 制定精神에 배치된다... 자기들은 외상으로 샀다가 땅값이 한참 오른 뒤에 그것도 現金으로 一時的으로 받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長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軍事上 需要가 없게 되어 還買權者에게 土地를 매각할 경우 對民關係의 改善은 물론 民願發生의 사전방지 차원에서 그리고 被徵發者의 徵發被害를 補償하겠다는 徵發財産特別法 制定의 본래의 취지에 충실한다는 입장에서 現行法 태두리내에서나마 還買權者에게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던 휘발유값 문제입니다.

政府는 油價의 自律化措置를 시행하면서 油價의 談合時 公正去來委員會에 提訴를 하는 등 모든 行政力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油價의 自律化 이후에도 각 注油所 및 油類業體에 사실상의 談合行爲에도 政府는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7日 零時를 기해 油公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油價引上에 처음에 엄포를 놓았던 것과는 달리 袖手傍觀하고 있습니다.

經濟企劃院은 당초 精油會社들의 휘발유가격引上 움직임에 대해서 油價 自由化 先行條件未充足 및 談合嫌疑 등을 들어 이를 強行하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밝혀왔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企劃院의 이와같은 자세는 휘발유 價格이 全體 油類對比 消費比重이 낮아서 6 내지 7%로 크지 않아서 物價指數 算出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物價指數管理에 별 문제가 없다는 관료적인 숫자놀음에 빠져서 또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치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政府는 注油所의 거리制限 廢止 및 注油所 상품표시제 실시 등 消費者 利益과 직결된 措置는 거의 하지 않고 뒤로 미룬 채 휘발유 등 9個 油種의 價格 自由化만을 서둘러서 반쪽짜리 自律化로 精油會社의 價格談合 및 引上을 통제할 고비를 놓쳐서 消費者들만 골탕먹이고 있는데 이러한 油類의 價格 自律化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그 事後管理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現在 動資部와 企劃院은 油類價格 自律化以後 문제점들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이번 휘발유 가격에 대한 사실상의 談合引上에 대한 政府의 對策은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대체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豫備費 部分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0年度 豫備費支出決定額은 前年度보다 44% 增額된 5,199億원이고 이 가운데 5,139億원이 支出되고 59億7,000萬원이 支出決定殘額으로 남았습니다. 支出殘額 규모는 前年度보다 89年보다 176% 증가하는 등 豫備費를 政府가 주머니의 삼지돈 정도로 여기고 마구 당겨쓰는 방만한 運營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一般經費 3,150億원 가운데에는 83%가 安企部가 사용한 소위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活動經費로 支出된 것으로서 그 金額 2,162億... 어저께 우리 金榮度委員께서 지적했지요. 前年度 對

比 31%나 增加된 것입니다. 또 이밖에 災害對策費는 1,696億원으로 前年度 770億원보다도 120% 增加되었습니다. 給糧費는 31億원으로 24%가 前年度보다 증가했습니다. 또 사전 調査費같은 것은 무슨 計劃이 있어 가지고 策定해 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比率이 안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豫備費 使用의 급증은 豫算會計法 21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당키 위해 사용하는 부득이한 支出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視角으로서는 政權安保를 위한 支出, 支出을 위한 支出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豫備費使用은 豫算會計法上的 正心에 입각해 가능한 억제되어야 하며 政權의 무능과 無責任·無政策을 호도하고 치장하는 方策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과 같은 원칙과 正心에 입각해 불합리한 豫備費 編成은 앞으로는 是正하고 그런 점들은 앞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靑瓦臺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합니다.

어제께도 조금 부분적으로 言及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法務部長官께서 나와서 答辯하셨는데 그 數値上에 제가 조금 오해한 점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答辯하실 때 고쳐주셔도 돼요.

大統領秘書室은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司正首席擔當秘書官 아래 司正業務를 총괄 지휘해 왔습니다.

또한 監査院도 90年度에 150億원의 豫算을 사용하면서 司正 및 監査活動을 해왔습니다. 또 總理室 傘下에 行政調整室에서도 第4調整官, 司正活動을 위해서 豫算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靑瓦臺에서 特命司正班을 설치하고 그것도 豫備費에서 갖다 쓴 돈이 7億2,400萬 원입니다.

각자 이렇게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豫備費를 갖다 쓰면서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司正活動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특별한 事由가 있었느냐 그런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이 疑問입니다.

말하자면 司正活動에 관한 것은 政府의 固有 基本業務다 이렇게 봅니다.

一般會計에 다 計上이 되어서 俸給, 情報費 이런 것 다 해주는 것인데 靑瓦臺, 監査院, 總理室 등등 가리지 않고 豫備費를 갖다가 司正活動에 감시하는데 써야 될 정도로 완전히 썩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提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司正活動에 관해서 지금 豫備費 쓴 부분으로서 제가 監査院長, 內務部長官, 法務部長官, 行政調整室長, 그리고 靑瓦臺……. 지금 나와 있지 않단니까 靑瓦臺에서 누구 責任者 나와서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또 이것 제가 아까 數字的인 착오라고 한 것은 法務部長官이 어저께 말씀하신 중에서 11件에 21名의 資料를 이첩받아 가지고 그것을 단서로 해서 搜查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것이 靑瓦臺關係에 관한, 靑瓦臺를 사칭한 그 件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特命司正班에 의해서 이첩받은 件數인지, 그건 내가 조금 잘못 들어서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數値는 長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數字놀이를 한번 풀어 봤더니 이 靑瓦臺 特命司正班에 의해서 11件에 21名을 했다고 하고 豫備費 쓴 것을 해 보니까 한 件當 所要費用이 6,600萬원이 所要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6,600萬원… 한 件하는데 6,600萬원… 이것 대단한…

그래서 이것 제가 前提를 했어요. 더 많은 數字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을 特命司正班으로서 받은 단서를 제공받고 團束을 요청받은 件數가 이것 만인지 그건 내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이것만으로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숫자놀이지만 1件當 6,000萬원 이상의 돈을 國民의 稅金을 집어넣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제는 檢察이나 警察이나 司正이나 예비비에서 돈 만들어서 寸志, 活動費, 搜查費, 手苦費 안주면 일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일 안한다 이것이에요, 月給

만 가지고는. 그냥 왔다갔다하는 정도로서 그것도 月給값이다 이거야.

일 벌이고 일 찾아내고 뛰어다니는 데는 돈을 줘야한다 이런 얘기에요. 寸志를 줘야 된다, 과외돈을 줘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件數가 다 마찬가지로예요. 이것 總理室 行政調整室 豫算決算할 때 이 문제 다... 그래서 이것 다시 常任委員會에서 했던 것을 여기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려고 했는데 막 갖다주세요. 權力機關에서 전부 갖다주세요.

조금있다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大統領이 작년 10·13戰爭宣傳布告한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것을 내가 이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다.

돈갖다 쓰는 競爭이예요. 經濟企劃院도 豫備費 쓰기는 마찬가지로예요.

經濟難局報告大會 開催를 명목으로 1億9,000萬원의 豫備費를 支出 결정했습니다. 經濟難局報告大會에 2億가까운 돈을 豫備費에서까지 끌어다 쓰는 이런 行事は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過消費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經濟企劃院부터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過消費를 부채질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大統領... 國家元首의 出他 旅行에는 물론 費用이 듭니다. 밝힐 수 없는 費用도 들 것이예요. 警護經費... 우리 6共和國에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警護한다고 무지무지하게 돈을 갖다 써요. 大統領警護한다고. 그런데 過去之事니까 내가 이야기 한번 하겠어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朴正熙 大統領때 그렇게 警護室 무서운 사람들이 大統領警護하러 간 사람이 濠洲에서 警護責任者 한 사람이 권총을 호텔서랍 속에 놓고 가버렸어요. 濠洲를 訪問하고 뉴질랜드를 가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생각하니까 자기 권총을 놓고 왔단 말이에요. 警護責任者가, 警護 두번째 責任者가. 아마 外務部에서 혼났을 것이예요. 여기 外務部長官 계시지요? 아마 아실 것이예요.

이것 新聞에 날카로서 戰戰兢兢하고 그 호텔 社長한테 절을 수십번을 해가지고 권총을

찾아다가 메꾼 적이 있습니다.

大統領警護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警護한다고 하면서 돈 멋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누가 체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過去之事입니다. 決算이니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國家元首의 活動에 대해서. 保安上의 이유로써 金額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支出된 것이니까 이것은 過去之事니까, 96億5,000萬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太平洋沿岸 4個國 巡訪과 蘇聯訪問 때 96億5,000萬원, 100億원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100億원을 썼다... 이게 단돈 1億도 없는 우리같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엄청난 돈인데 이 內譯을 좀 밝혀줘야 되겠다, 內譯을. 이것도 과소비 아닙니까?

豫算會計特例法에 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安企部가 쓴 豫備費 2,612億원은 이것을 한번 計算을 해 보니까 이것도 숫자 놀음입니다. 하루에 7億원, 우리가 어디에다 썼는지도 몰라요. 總計主義니까 썼다하면 쓴 줄만 알면 돼요. 國民이. 하루에 7億원, 1週當 52億원, 한달에 220億원 이런 돈을 總計主義로, 內部事項도 모르고 예비비에서 國家安全保障을 위해서 썼다하고 돈을 갖다 써왔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만 있어야 돼요. 얼마 썼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安全企劃部가 거창한 집을 지금 짓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나중에 豫算 때 우리가 얘기합시다.

또 앞에 말씀드린 情報部라는 말은 安全企劃部로 고쳐 주세요. 情報部에 옛날에 혼란적이 있어가지고 자꾸 情報部 애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安全企劃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國家經營하는데 安全企劃部 중요하지요. 우리가 情報 없이 어떻게 政策을 수립합니까? 또 어떻게 남과 競爭을 합니까? 또 우리는 分斷狀態에 있고 어쨌든 對峙狀態에 있어요. 나는 安全企劃部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앞으로는 海外活動...美國 CIA가 바꾸는 식으로 産

業스파이 이렇게 機能과 役割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國家安全이라는 이름으로써 이렇게 돈을 멋대로 쓰고도 하루에 7億원 豫備費 部分이에요. 豫備費... 이것이 진짜 돈이 거기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꼭 써야 할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豫備費에서 支出한 額을 숫자로 풀이해 보면 이런 숫자가 된다고요. 이것 國民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예요. 한달에 220億원 한달에 220億이예요. 분명히 여기서 갖다 썼어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結果만 우리가 通知 받는 것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은 이것은 없어야 되겠다. 經濟企劃院長官兼副總理께서 아마 같은 共感일 것입니다. 이렇게 豫備費를 갖다 쓰고 이렇게 運用을 하니깐 소위 여러분들이 財政學 공부한 사람들이 말하는 財政運用에 彈力性이 전혀 없어요.

사실 國家 安全保障에 관한 것은 이것도 基本的인 얘기이지만 國家의 基本的인 機能 아납니까? 國家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生命 財產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 아납니까? 이것 당당히 國民에게 밝히고 計上해서 써야 할 돈이예요. 一般會計에 넣어서 써야 할 돈이예요. 물론 諜報活動費 여러가지 秘密 대목이 있겠지요. 그것은 情報費라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안 밝혀도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왕년의 安全企劃部의 思考方式으로 이런 식으로 돈 막 갖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손만 들어줘요 박수만 쳐줘요? 이것 적어도 이 部分에 대해서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部分에 대해서는 이번 決算檢査에서 분명한 어떤 선을 우리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겠다는지 또 運用의 어떤 改善策을 어떻게 강구하겠다는지 그런 얘기가 꼭 나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길어서...

○吳景義委員 委員長 議事進行을 뭐 그렇게 해요. 시간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해야지...

○委員長代理 洪熙杓 조용히 해요 빨리 진행해요.

○朴 實委員 내가 알아서 적당히 할라니까 좀 양해해 주시요.

(場內騷亂)

吳委員님 미안해요.

○委員長代理 洪熙杓 빨리 整理해요.

○朴 實委員 내가 열심히 공부해온 것 좀 해야지...

(場內騷亂)

○委員長代理 洪熙杓 조용히 해요. 됐어요.

○朴 實委員 外務部가 90年度 換差損補填經費로 55億원이나 사용한 것은 經濟外交時代에 外務官僚의 經濟的 無感性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外務部 經費에서 換差損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이 國際經濟變動이나 換率 거기에 대한 豫測力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내가 이제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만 하고 말테니까 좀 참으세요.

宣傳用 犯罪와의 戰爭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하겠습니다. 10·13 犯罪와의 戰爭宣布는 한 件主義的 展示行政으로 1년이 지난 지금 實效性和 實績에 많은 疑問을 提起하고 있지만 그런 政治的인 側面이라든지 이런 社會的 側面말고 本委員은 豫算執行의 觀點에서도 犯罪와의 戰爭이 文字 그대로 내용과 사실보다는 對國民 宣傳用的 한 件主義的 展示行政의 代表的인 事例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최소한 戰爭이라는 概念을 導入해서 犯罪團束을 한다면 事前에 치밀한 計劃과 相關 費用 및 豫算의 確保 등이 미리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戰爭宣布 宣戰布告해 놓고 그때부터 돈 준비하고 사람 動員해 가지고 戰爭 치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國際法 무시하고 宣戰布告없이 行動부터 먼저 하는 것이 戰爭의 양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戰爭宣布를 미리 해서 요란하게 떠들어 놓고 豫算的인 뒷받침은 한달이 지나서야 겨우 되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한달동안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豫算執行實績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展示行政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政府는 10月 13日에 犯罪와의 戰爭宣布를 해 놓고는 이와 相關된 豫算의 豫備費에 대

한 大統領의 決裁日은 한달이 지난 11月 15日이고 豫算配定은 戰爭宣布후 40日이 경과한 11月 20日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豫算 具體인 準備 對策 갖추어지지 않고 演說부터 했어요. 宣戰布告부터 했다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政府가 거꾸로 나가네요.

外務部 좀 칭찬해야 되겠어요. 外務部는 大統領의 太平洋沿岸 4個國 巡訪을 위한 준비로서 出國 5月24日보다도 한달 앞선 4月 26日에 이미 豫備費支出을 받아서 전부 執行을 했어요. 그래서 大統領이 정작 出國한 5月24日에는 다 措置를 끝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國家豫算은 이렇게 執行되어야 된다. 計劃은 이렇게 執行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大統領이 海外旅行할 때는 이렇게 치밀하게 하고 大統領이 國民들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戰爭宣布를 하는데 이것은 演說만 했지 아무런 뒷받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허겁지겁 總理室이다 內務部다 뭐다 對策委에다 뭐한다 해가지고 豫備費만 잔뜩 써가지고 하는 흉내를 내서 실제로 별 불일 없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豫算支出이나 이런 政策을 執行하는데 있어서 豫算執行이라든지 豫算對策 이것이 有機的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해서 執行되는 것이 아니고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쓰는 豫算 그것이 大韓民國豫算이었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決算한다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副總理의 견해가 있으면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황설수설하게 제가 전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못해서 너무 오랫동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첫째로 委員님 여러분께 죄송하고 專門家이신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예요. 國務委員 여러분들은 文字 그 대로 愚問賢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솔직하게 그렇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約 수고했습니다.

다음 朴錫武委員 나와서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質疑하신 委員님은 되도록이면 좀 한 30分 臺 좌우로 해서 좀 整理를 해서 우리가 원할한 會議가 되도록 하고 同僚委員 여러분들은 同僚委員이 質疑하는데 혹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소리 지르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한 숨만 참아주면 만사가 형통이 됩니다. 양해해서 좋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나와서 發言하세요.

○朴錫武委員 民主黨所屬 全南 務安出身 朴錫武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先輩·同僚委員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오늘 지난 90年度에 政府가 집행한 國家豫算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그리고 豫算의 낭비없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여 90年度 決算에 대한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집행이 끝나버린 國家豫算이라 할지라도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검토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잘못 관행화된 豫算執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따라서 總理를 비롯한 해당 國務委員 여러분께서는 국사를 책임지는 막중한 입장에서 本委員이 제기하는 問題點에 대해 성실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13代 國會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기 13代 國會는 얼마만큼 국민의 편에서 국정을 감시했으며 또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이를 거역하지 않고 얼마나 올바르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13代 초반은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힘으로 與小野大라는 구도속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국민의 뜻이 국정에 가장 잘 반영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野黨에 주어진 사명 또한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외피만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그 뿌리는 바로 5共에 있었던 6共政權에 대해 국민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견제 감시하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국민의 뜻은 일부 野黨指導者들의 변절로 인해 여지없이 무

너져 버렸습니다. 3黨合黨이 있기 전까지 그나마 진전되어 오던 일말의 민주화 조치들마저도 폐기되거나 후퇴되면서 역사의 흐름은 난기류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13代 國會의 역사적 평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국정을 담당했던 6共政權에 대한 엄중한 歷史的 評價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6共政權에 대한 이같은 역사적 평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外國의 한 언론이 韓國의 현실태를 보도한 내용에서 그 함축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國內新聞에서도 報道가 되었듯이 그 내용의 한 단면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韓國인들이 쇼핑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성취를 축하하고 있다.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는 한조에 140萬원짜리 어린이 침대와 380萬원짜리 일제골프세트가 팔리고 있다.

돈이 많아 주체를 못하는 韓國사람이 많다.”는 등의 내용으로 韓國社會가 총체적 과소비로 인해 흥청망청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부격차로 인해 一部階層이 돈을 주체할 수 없어 몰쓰듯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이와같은 일부계층의 과소비가 6共政權의 재반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당연한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농민을 압살하는 農民政策, 오직 대기업만을 위한 수출 위주의 成長政策, 전면적이고 무차별적인 輸入開放, 金融實名制 유보, 土地公概念 후퇴, 방만한 財政運用, 通貨膨脹, 物價上昇, 不動產 投機, 地價上昇, 國際收支赤字 등 그 어느 것 하나 건실한 경제구조를 갖지 못하는 제반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總理께 묻습니다.

과연 6共政權은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만하고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本委員은 국민들에게 반목과 위화감을 조성시켰던 6共政權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특히 3黨合黨의 시기이고 6共의 후반기인 90年度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90年度는 86년부터 88년까지의 ‘3低 好況’에 이은 이른바 총체적위기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시기였습니다. ‘3低 好況’은 美·日사이의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에 따른 통상마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韓國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은 日本과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분야에서 對美輸出市場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상당정도의 고축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外的要因中的의 하나 즉 원貨가 절상되자 수출부진이 초래되었고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추가폭락을 가져왔고 부동산가격의 폭등,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이 경제적위기가 날로 고조되어 가는 추세속에서도 政府는 안일하고도 방만한 재정운용만을 일삼았습니다.

(洪熙杓幹事, 金珞泰委員長과 司會交代)

90年度의 재정운용 상태를 보면 90年度의 政府豫算의 특징의 하나가 세수초과를 대상으로 豫算을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豫算審議가 있을 때마다 어제든 先輩 同僚委員들께서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재정당국이 이같은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도 일신하는 면모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요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여 시정이 될 때까지 재차 삼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歲入豫算 수립시 90年 당초 세입예산은 22兆6,800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상의 세입은 27兆8,300億으로 5兆1,000億 이상의 세수초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초 세입예산대비 초과세수가 무려 23%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뿐 아니라 追更豫算을 편성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政府는 追更豫算의 國會審議가 本豫算보다 소홀히 다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차후에 追更豫算을 편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6共은 의도적 세수초과로 追更豫算을 관행화시킨 맹창예산 정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90년의 재정 운용은 稅法이나 國會豫算 審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6共들어 발생한 세수초과를 보면 88년에 3兆餘원, 89년은 2兆9,000餘億원, 90年度에는 당초의 本豫算對比 4兆9,230億원 등의 세수초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0年度の 경우는 89年度 이월금 3兆4,000億까지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어 실질적인 결산상의 차이는 8兆6,100億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전년도 歲計剩餘金을 재원으로 한 追更編成이 있었고 91年度 예상세입 초과분에 대한 歲入更正이 이루어져 앞으로 84億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세수초과 발생은 추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 능력의 부족이거나 또는 6共政權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폭등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의 결과로 발생한 불로이득이라 할 수 있는 자산소득의 증가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本委員이 제기한 세수초과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세수추계 능력부족, 둘째 재정당국이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으면서도 豫算編成 심의과정에서 팽창예산이란 비판을 면하기 위한 호도책의 일환이거나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 등입니다. 즉 追更編成을 위한 세수의 과소추계예상을 제도화하고 있고 관행화, 정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財務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매년 財務部長官은 예산 심의를 할 때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과학적인 세수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租稅研究院까지 설립하여 세수추계를 과학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은 이러한 研究院의 설립보다는 追更編成을 위한 의도적인 생각부터 먼저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長官의 의견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歲計剩餘金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豫算會計法 第47條의 규정에 의한 국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財務部長官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는 90年5月 經濟 당면과제중 하나인

物價安定을 위해 財政緊縮運用이라는 政策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經常費 및 事業費 節減額은 예년 발생규모의 2倍 수준인 2,000億원 내외였습니다. 그리하여 換差 糧穀代 등 追加發生分の 자체흡수액 1,000億원까지 포함하여 도합 3,000億원의 節減目標를 정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經濟企劃院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經濟企劃院은 政權安保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經濟企劃院의 위상과 기능 면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 의심이 가고 의문이 됩니다.

本委員이 이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企劃院이 과연 經濟關聯部處內에서도 독자적인 제 목소리를 갖고 政策을 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금번의 韓·蘇經濟協力 과정에서 副總理와 經濟企劃院이 소외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 때문입니다.

協商初期段階에 협상의 지속성과 비밀 유지를 위해 特定人的 활동과 조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공개된 시점부터는 系線上的 首長인 副總理와 經濟企劃院이 일선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8月 소련의 쿠데타 시기에 보여주었던 우리 政府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변화와 향후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副總理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현시기 對蘇 經協資金의 상환전망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對蘇 經協資金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추곡가 결정을 앞둔 70萬 농민에게 설득할 명분이라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社會間接資本投資調整委員會와 大統領秘書室의 社會間接資本投資企劃團간의 역할분담과 位相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는 靑瓦臺에 있는 이 社會間接資本投資企劃團이 오히려 經濟企劃院의 投資調

整委員會의 위에 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經濟企劃院 傘下團體는 오히려 부수 내지는 종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長官께서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安企部所管 豫算·決算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安企部에서 사용하고 있는 豫備費는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總額으로 決算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委員들이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豫算會計特例法 2條의 規定에 의거 總額으로 決算한다고 할 때 이 特例法 자체는 바로 憲法에 보장된 國會의 豫·決算에 대한 審議權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違憲의 條項이라는 것도 여러 委員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憲法 第55條2項은 豫備費를 總額으로 計上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決算까지 總額으로 하도록 한 規定은 憲法條文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豫備費의 속성이 예측할 수 없는 支出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豫算編成時는 總額으로 計上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豫算만큼은 項目別로 國民의 代表機關인 國會에서 審議해야 합니다.

지금 90年度 安企部所管 情報費 豫·決算報告書는 豫算額 164億餘원중 162億餘원이 집행된 것으로 總額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즉 國會가 憲法上 保障된 기능을 잃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豫算會計特例法 第2條는 명백하게 違憲이라고 저희들은 여기는데, 行政部쪽의 總理께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脫冷戰時代를 맞이하는 이때에 아무리 國家 安保上 중요한 情報機關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한정된 범위에서라도 豫·決算에 대한 수치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總理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一般豫備費에서 사용하고 있는 安企部用 豫算은 安企部豫算에 포함시켜야 하며 豫備費 본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政府 各 部處는 豫備費 성격의 支出이 필요할 경우 다른 豫算을 轉用해서 사용하는 것이 慣例化되어 있습니다. 豫算會計法에 規定된 豫備費의 사용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經濟企劃院의 豫備費가 실제로는 安企部用 豫算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것에서 반증되고 있습니다. 즉 政府 各 部處內에서는 各 部處所管 豫備費가 힘있는 機關인 安企部の 專有物로 여겨져 專역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태에 대한 總理의 견해는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委員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委員들이 지적하지 않은 몇 個 部處의 豫備費使用問題點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內務部所管 豫備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部는 이 豫備費 189億3,000萬원중 112 순찰차등 民生治安 裝備補強으로 29億9,000萬원을 支出했는데 이것은 中長期需給計劃에 따라 本豫算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事業입니다.

또한 새秩序새生活善導團體의 支援經費로 3 億6,000萬원을 支出했는데 새생활새질서運動은 官邊團體의 活性化에는 기여했을망정 实效性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요된 豫算은 國庫浪費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治安本部 3 億5,000萬원, 서울市警 5億4,000萬원, 釜山市警 1億1,000萬원 등 總 10億원을 轉用해서 새秩序새生活實踐經費로 사용하고 있는 豫算會計法 第36條의 명백한 違反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本豫算에 반영해야 할 街頭職業靑少年 등에 방한피복지급비로 19億1,000萬원을 사용하고 87년부터 불우이웃에 대한 방한 피복비를 매년 豫備費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豫算會計法 第21條 「豫備費는 예측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초과 지출에 充당하기 위한 것」이란 조항을 무시한 집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7年 鑛山勤勞者被服費 19億원, 88年 등대원 방한피복비 21億원, 89

年 방법원 피복비 1億9,400萬원의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90年度에 內務部가 189億9,300萬원의 豫備費를 편성하면서 內務行政豫備費 77億7,400萬원 중 一般行政 47億1,000萬원의 60%나 되는 28億5,200萬원을 特別辦公費나 情報費로 支出했으며 治安行政豫備費 112億1,800萬원 중 特別辦公費로 10億6,300萬원, 情報費로 22億480萬원을 사용하여 豫備費 29%인 總 32億6,700萬원을 支出했습니다.

이같이 豫備費를 特別辦公費 情報費로 과다 지출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內務部長官은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생각컨대는 이런 돈들이 지금 安企部로 흘러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89年, 90年에 지급된 연말의 방한복 대금의 總額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1年과 92年度의 액수는 또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內務部長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8년에는 年末大統領贈物配付計劃에 의해 등대원이나 자활근로자, 가두직업소년, 미성년가장 등 8,915名에게 방한외투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불우이웃들에게 방한외투를 선물한 것은 어떻게든 잘한 일이지 여쭙어도 是非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支出의 適法性問題입니다.

豫算編成時 部處所管 豫算 執行計劃이 모두 수립되어 있을텐데 어느 부분에서 支出이 되었는지 內務部長官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大統領의 下賜品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內務部에서 支出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瓦臺 돈도 있고 大統領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도 왜 부족한 內務部 돈으로 명칭은 大統領 下賜品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마치 주머니돈 쓰듯이 政府 돈을 쓰고 있는나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도 이 기회에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것들이 선거철이면 더 많은

액수로 下賜를 하고 大統領 이름이 쓰여진 물건을 받으면 감지덕지해서 표를 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大統領 下賜品關聯 支出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8年 資料인데 한 해에 22億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內務部 財政局 아니면 地方局에서 支出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돈이 어디서 支出되고 있는가도 오늘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國家 돈으로 大統領이 개인적 인심을 쓰는 듯한 이런 下賜品은 중단되어져야지 않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견해인데 혹시 內務部長官께서도 저의 견해에 동조하신다면 동조하신다는 이야기를 나오셔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保健社會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保社部에서는 '92年 豫算案에 대해 社會福祉費가 1,000億 이상 削減되었다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社會福祉事業 遂行機關인 保社部가 '90年度에 시행한 社會福祉 事業들의 결과를 보면 保社部 자체의 豫算執行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0年 決算書에 나타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각 社會福祉 豫算을 災害救護費로 轉用하였는데 이와같이 轉用한 災害復舊費가 不用額으로 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轉用豫算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선심용으로 변칙지출되고 있습니다.

保社部の 自治團體에 대한 經常補助金 중에서 정신질환 운영비 보조 49億1,100萬원 중 1億5,300萬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億1,400萬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7億2,600萬원 등이 不用額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社會福祉 施設들의 補助金이 상습적으로 不用額으로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낙도 의료원을 위해 운행하는 병원선들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豫算 轉用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 수업비 지원 금액 중 13億4,700萬원이 災害救護費로 轉用되었습니다. 災害救護費 豫備費로 充당해야 하는데도 他費目에서 전용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수업비 豫算이 이처럼 많이 남는 것은 保社部의 豫算 政策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社會保障費의 不用額 71億1,200萬원중 98%에 해당하는 69億7,200萬원이 소외계층들을 위한 유일한 사회보장정책에 이용되는 '기타 사회복지관'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保社政策중 사회보장 정책이 실패하고 있지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年 社會福祉費가 1,000億 이상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과 비교해보면 너무도 아이러니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本委員이 제기한 의문점들에 대해 保社部長官은 명백한 답변을 통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總理秘書室 '90豫備費 支出額중 2億7,400萬원이 범죄 및 폭력퇴치, 새질서 새생활 지원비로 지출되었으며 行政調整室 豫算 12億8,200萬원이 노사분규 동향점검반, 정책 평가 전담반, 민생치안 특별대책비, 범죄 및 폭력퇴치, 새질서 새생활 지원경비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豫算이 과연 豫備費에서 지출되는 성격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安企部 轉用豫算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用處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動力資源部長官에게 묻습니다.

動資部 決算書를 보면 441項 石炭開發 科目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項目豫算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비로 轉用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轉用의 이유로 집중호우로 인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및 운탄도로 복구비 부족액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動資部가 豫算轉用의 이유로 들고 있는 호우피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호우피해는 豫算會計法 第21條에 규정된 바와같이 예측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이기 때문에 의당 豫備費에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支出이 어떻게 科目間 轉用に 의해서 지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法的근거와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會計法 第39條를 보면 豫備費는 經濟企劃院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豫備費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轉用이 經濟企劃院長官의 承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經濟企劃院長官도 업무태만이나 월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豫備費에서 사용되어야 할 豫算을 轉用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월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입니다.

長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에게 묻습니다.

國防部 所管 90年度 豫決算중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를 보면 歲入決算額이 2,144億餘원이고 歲出決算額은 1,265億餘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歲計剩餘金은 880億餘원에 이릅니다. 이 중 다음年度 移越額을 제외하면 60億餘원이 純 剩餘金으로 남습니다.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에 대해 本委員이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자하는 점은 歲入豫想額에 대한 것입니다. 國防部가 제출한 90년도 決算報告書에는 歲入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징수가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科目별로 총액만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歲出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軍用施設郊外移轉問題는 기간과 장소에 따라 대단히 많은 경비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 歲入부분에 영향이 있으리라 보며 이해관계도 크리라 봅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國防部는 아직까지도 보안을 이유로 이들 내역의 공개를 극력 꺼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國防豫算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알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軍事上 극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戰力增強같은 내역은 비밀유지가

그 타당성을 갖겠으나 軍用施設의 교외이전 문제같은 것은 공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를 군사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90年度에 시행한 軍用施設의 교외이전이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몇 件에 총 소요액은 얼마인지를 國防部長官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公報處 所管입니다.

이것은 어제 또 여러 委員들이 지적을 하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90年 公報處의 一般會計 補助金 執行內譯을 보면 지출액이 總 29億8647萬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自由總聯盟에 지원한 액수는 23億330萬5,000원으로 전체 補助金 執行內譯의 77%에 달합니다. 補助金의 대부분이 自由總聯盟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長官께 묻습니다. 이 自由總聯盟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당시 文公委員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 이 團體가 反共聯盟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잘 압니다. 反共聯盟이 과거 유신시절 5共 시절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제신 閣僚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先輩·同僚들이 잘 압니다. 못된 짓을 많이 한 團體입니다. 自由民主主義를 수호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團體는 늘 政治的 目的으로 이용되고 또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代國會가 開院되면서 부터 바로 이 反共聯盟은 廢止하자 그래서 그것은 與野가 합의해서 廢止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廢止할 수는 없고 거기에는 약간의 재산도 있고 하니까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서 활동할테니까 自由總聯盟法을 만들어주시오 해서 그것도 與野가 합의를 해서 自由總聯盟法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전 제조건은 여기에 제신 崔秉烈長官께서 당시 公報處長官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능한 이 自由總聯盟法이 만들어지면 國庫補助 없이 회원들의 회비부담으로 자체운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 自由總聯盟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석같은 언약은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20餘億원씩 매년 보조되고

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프랑카드를 거리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保安法改正 운운하는 놈은 빨갱이다 세상에 국민 학생들도 그런 용어는 안 씁니다. 그런 생경하고 듣기 거부한 용어들을 거리거리 곳곳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國費로... 이렇게 나라가 다스러져야 되겠느냐. 너무도 한심스럽기 때문에 自由總聯盟에 지원되는 이 보조액은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長官에게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聯盟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파격적인 國庫支援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그 團體는 시대적 조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 아침신문을 보니까 레닌의 시체가 해외로 경매 붙여져가지고 레닌의 시체가 어디로 팔려 갈 모양입니다. 지금 共產主義가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反共 反共 해가지고 계속 國庫를 數拾億씩 쓰는데 이 團體에 대해서 이제는 마땅히 國庫支援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公報處長官의 견해를 答辯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補助金의 90年度 사용내역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自由總聯盟의 활동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文化部長官께 묻습니다.

文化部에서는 그동안 선현들의 유적지라든가 역사의 현장들에 대한 표지판세우기 운동을 90年度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個 장소에 어떤 내용의 것들을 어떻게 설치해 놓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소요된 豫算總額은 얼마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新聞을 보면 文化部에서는 歷史的 人物이라고 해서 月別로 한 분석을 선정해서 이 달의 人物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 人物選定의 기준이 객관성을 좀 결여했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長官께서 분명히 알으셔야 되는데 특히 李朝 500年 동안에 더구나 後半期에는 四色黨爭이 있어가지고 老論에서 치켜세우는 사람은 少論이나 南人쪽에서는 우습게 봄

니다. 또 少論에서 높이 치켜세우는 분에 대해서는 老論쪽에서는 우습게 알고 있는데 우선 기록 자체가 완전히 두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人物에 대해서 南人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歷史的 人物로 평가해놓지만 老論쪽 기록을 보면 우습게 평가해놓은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人物들을 선정하는데는 그야말로 客觀性이 유지돼야 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결여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항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그 분이 태어난 마을에 가 보면 우습게 아는데 오히려 그 분이 태어나지 않은 다른 마을에서는 그 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어떤 客觀的 基準을 가지고 人物을 선정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서 더 좋은 人物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月別 人物을 정하는데 그 효과는 무엇인가 무슨 효과가 있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人物을 정해가지고 다소 경비를 쓰고 그러실텐데 경비는 人物 한 분당 어느정도 豫算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個 部處에 대해서 豫算의 執行 內譯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을 묻고 또 시정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오셔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어제 그제 여러 委員들이 같이 지적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도를 달리한 측면에서 간단하게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瑢泰 다음은 朴亨午委員 質疑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亨午委員 民主黨所屬 朴亨午委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同僚·先輩委員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國務委員 여러분!

本委員은 13代 마지막 會期의 豫算決算特別 委員會 委員으로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을 기쁨에 앞서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直言하자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0年度 決算은 사실상 國民血稅에 의해서 國家가 운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國民을 대표하는 國會決算委員會에서 政府를 대표하는 總理가 나와서 분명히 答辯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會計나 數字監査가 아니고 政策 決算監査이기 때문에 總理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國民에 대한 무시요 主權者의 대표를 하고 있는 國會에 대한 하나의 무책임이다 本委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經濟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國際收支가 赤字요 또 國內經濟가 말할 수 없이 物價가 上昇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메강도, 檢事하고 깡패하고 술을 먹는가 하면 유부녀가 強姦을 당하고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1990年 豫算 27兆몇千億에 달하는 豫算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가 과연 國家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거 잘 했다고 봅니까, 못 했다고 봅니까? 이러한 責任을 당연히 總理가 나와서 答辯도 하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來日이 있기 때문에 延長線上에서 앞으로는 착오없는 하나의 國家運營이 되어야 될 텐데 總理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本委員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얼마나 社會가 복잡합니까? 다른 經濟的으로 좀 혼란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人間의 고귀한 生命이 하루 아침에 자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까?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리를 나갈 때 어린아이의 밑바지가 찢어져라 하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놓지면 자식을 놓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이 무슨 말이오, 혼란입니까? 이 責任은 政府가 당연히 져야 됩니다. 이런 혼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제를 거울삼고 내일을 위해서 차질없는 國家運營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다같이 염려하는 나머지 總理는 여기 당연히 나와서 答辯도 하고 듣고 비판도 받아야 될 텐데 나오지 않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유감을 표합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農林水産部所管 決算과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農林水産部 所管事項을

質疑하면서 總理는 만나왔으니까 總理 애기는 예겠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答辯을 요구하는 眞意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農林水産委員會 委員으로서 常委活動을 전개해 왔습니다. 農林水産部所管 重要政策決定事項이 農林水産部長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經濟企劃院長官에게 決定權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農林水産委員會 活動에서 바로 직접 本委員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農林水産部 所管事項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는 것을 특히 諒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직접 答辯해 주시기를 사전에 미리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990年度 農林水産部所管 一般會計 不用額은 66億7,727萬8,800원입니다.

그 중요내역을 살펴보면 淺水灣漁場 經濟性 調查計劃 취소로 1億9,700萬원, 定員 및 基準號俸未達運營으로 2億6,769萬원, 政府豫算節減計劃에 의한 節減 57億1,430萬원, 執行殘額 4億9,568萬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豫算節減으로 인한 57億1,430萬원이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年度 農林水産部 豫算額은 1兆2,649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全體豫算規模의 5.4%라는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특히·基本的 經費 등 硬直性豫算을 공제한 사업비는 他事業部署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豫算節減計劃을 가둬서 부족한 農林水産部の 事業費까지 깎아서 적용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農林水産部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또 1990年度 農林水産部所管 一般會計의 豫算轉用額 69億6,394萬원중 48億7,605萬원과 移用額 203億6,240萬원중 173億7,605萬원 합계 225億3,845萬원이 災害對策費로 충당됨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각종 農水産開發關聯 重要事業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災害對策費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 支出에 충당하는 비용으로서 마땅히 豫

備費에서 支出해야 할 것이며 기존 災害對策費 463億1,898萬원을 豫備費에서 支出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225億3,845萬원도 豫備費로 支出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豫算의 轉用이나 移用으로 執行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豫備費를 총괄하는 經濟企劃院 當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분명히 그 점을 한계를 지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0年 糧穀管理基金 決算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0年 同 基金決算에 의하면 糧穀賣出原價와 販賣額의 차이에 의하여 3,336億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米穀販賣의 缺損에 의한 것입니다.

90年 政府管理糧穀의 販賣原價와 放出價格의 차이는 5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政府가 가마당 5萬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米穀의 판매에 있어 低價格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政府는 米穀의 二重價格 實施에 따른 缺損을 모두 農民만을 위한 손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低米價政策은 農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 米穀을 소비한 소비자와 이로 인한 生計費 支出을 낮추어 賃金上昇壓力이 완화되어 企業家도 低賃金 支出로 이익을 본 것입니다.

물론 農民에게 혜택이 돌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은 이러한 全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糧穀販賣에 다른 缺損을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政府의 缺損은 상대적으로 全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本委員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 혜택을 소비자 企業家 生産者가 모두 보았을 것인데 90年의 糧穀販賣에 따른 缺損額 3,336億원중... 計數는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돌아간 혜택을 계산한다면 각각 얼마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農業은 지난 1962年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수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都市化 工業化 위주의 高度成長의 그늘 아래서 一方的인 희생을 강

요당해왔습니다. 都農間の 현격한 所得隔差와 地域間の 不均衡의 成長 속에 荒廢化되어 왔습니다.

지난 60年代初 全體人口의 60% 이상에 달하는 1,700萬名의 農漁民이 오늘 날에는 16% 수준인 700萬名으로 줄어들었고 수지맞는 농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年間 50萬名 이상의 農漁民이 農村을 버리고 都市로 流入되어 都市貧民化되고 있습니다.

특히 政府가 권장한 農事나 所得作目은 모두 失敗만을 거듭했고 韓牛入殖波動, 돼지波動, 양과·마늘·고추·땅콩波動, 송아지波動 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負債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87年 戶當 平均 239萬원에 달하던 農家負債는 90年末 현재 473萬4,000원으로 증가했으며 今年 年末 推計로는 總 540萬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農林水産業은 農家戶當 平均 耕地面積이 1.2ha입니다. 耕地整理率도 計劃面積 100萬ha의 64%수준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水利安全畜率도 54%라는 취약한 生産基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生産基盤의 擴充이 그 어느 部門보다도 時急한 이때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農林水産部所管 事業費에서 무려 252億3,845萬餘원을 災害對策費로 轉用했다는 것은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移·轉用金を 災害對策費로 轉用한 경위에 대해서 副總理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農民들은 UR農產物協商 妥結을 앞두고 時時刻刻으로 물러오는 國際化·開放化時代를 不安과 초조속에 아무런 對應力도 갖추지 못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나마 所得作目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쌀마저도 政府當局의 低米價政策과 美國의 市場開放壓力속에 붕괴됨으로써 삶의 指標를 잃고 있는 實情입니다.

政府의 추곡수매 發表가 되자 全國農村에 秋收를 앞두고 논두렁을 갈아엎고 秋收罷業과 里長들이 집단사표를 내는 등 불만과 배신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政府는 42兆원의 허구적인 수치로 農業構造 調整이다, 農村所得 倍加 운운하고 있는데 이중 12兆원이 農民負擔임을 감안하면 政府는

실질적인 農業政策보다는 弘報爲主의 農政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生産費에도 못미치는 秋穀價와 收買量에 이렇게 인색하면서 어떻게 所得倍加 운운할 수 있는지 그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質문제가 나온 김에 今年度 秋穀收買價格 및 收買量 決定과 관련하여 主管部處인 經濟企劃院長官에게 묻겠습니다.

農林水産部長官에게 묻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0年末 現在 糧穀管理基金의 累積赤字는 4兆4,774億원으로서 前年對比, 89年하고 90年對比입니다.

7,481億원이 增加한 反面 財政部門에서 8,800億원을 補填해 줌으로써 7,024億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缺損發生은 당연히 當該年度 歲計剩餘金으로 補填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移越시키고 있는 것은 累積赤字를 口實로 하여 收買價格 및 收買量을 縮小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疑懼心を 提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糧特赤字가 秋穀收買 適正生産費 保障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都市消費者에게 二重穀價에 의한 저렴한 판매로 物價安定을 위해서 발생한 赤字인지를 분명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糧穀管理基金의 缺損累計가 4兆5,000億원에 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財政에서의 부담이 어렵다는 것이 政府當局 특히 經濟企劃院當局의 收買價格 및 收買量 固守의 論理입니다만 그러나 참고로 日本의 경우만 하더라도 高米價政策과 農民의 所得保障의 次元에서 年間 3,117億엔 즉, 우리돈으로 換算해서 1兆7,000億원 이상 缺損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日本의 경우는 89年度의 경우 一般會計에서 2,320億엔 즉, 1兆2,700億원이 食糧管理特別會計로 전입되고 있습니다만 糧特缺損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累積되고 있습니다.

91年産 秋穀收買時 우리 黨이 주장하는 收買價 引上分과 收買量 增加 要求分의 追加負擔分의 財源捻出에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副總理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收買價格을 糧穀基準 가마당 5,000원을 引上한다고 하더라도 1人當 主食費 增加額은 年間 7,000원으로 都市의 5人家族基準 家口當 年間 3萬5,000원의 追加負擔밖에 발생되지 않는 金額입니다.

즉 한달에 都市 한 家口當 3,000원을 더 支出함으로써 農民과 農村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收買物量 역시 今年 年末基準으로 1,540萬石의 在庫量을 이유로 850萬石 收買를 高집하고 있습니다만 本委員은 여기에서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政府當局의 短見에 警鐘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國民이 輿望과 期待속에 統一指向의 政策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北韓은 年間 1,000萬石 이상의 食糧이 不足한 實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政府米는 統一을 향한 意志, 統一에 대비한 潛在力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족한 實情인 것으로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1,540萬石은 결코 過剩在庫量이 아니라는 事實입니다.

經濟企劃院長官!

6共의 치적으로 삼고있는 南北和解와 UN 同時加入에 따른 앞으로 統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安保와 天災地變時 國民의 生存權에 所要되는 食糧의 適正 備蓄量을 도대체 얼마로 보고 제시니까?

이스라엘은 6個月分을 備蓄 目標로 삼고 있습니다.

副總理의 安保와 生存에 관련된 適正 備蓄量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 備蓄量의 過多與否와는 별도로 政府收買量의 확대는 700萬 農民의 所得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農村 現實입니다.

쌀은 農家所得의 29%, 農業所得의 49%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農民의 주된 所得作이며 全體農家의 84%가 생산하고 있어 우리 農業을 지탱하고 있는 원 뿌리인 것입니다.

만일 政府當局이 끝까지 7% 引上率과 850萬石 收買를 高수 高집한다면 產地 쌀값의 暴落現象과 收買波動이 提起될 것은 明若觀火하며 이로 인한 農村 被害는 더욱 可視化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경고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經濟企劃院 當局의 再考를 要求하며 앞으로 豫算을 運用함에 있어서 不足現狀을 빚고 있는 農水產關聯 事業費까지 節減計劃을 적용하여 生産基盤擴充 등 시급한 緊要事業이 차질을 發生하지 않도록 이에대한 명확한 答辯을 촉구하면서, 6共政府로 부터 農水產政策에 관한한 철저히 배신당하고 있는 700萬 農民의 이름으로 秋穀收買價와 收買量에 대한 政府의 當初計劃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黨 案으로 修正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副總理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 간단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0年 農水產物 輸入 賦課에 따른 貿易特計資金의 變則 運用에 대한 問題點에 대해 묻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올해들어 上半期동안 農水產物 輸入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1%나 증가한 반면 農畜產物 輸出은 10%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關稅廳資料를 확인해보면 올 6月末까지 農산물 輸入은 21億7,600萬弗에 輸出은 4億2,500萬弗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른 農산물 貿易收支赤字는 17億5,000萬弗로 國內 全體 貿易收支赤字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農산물 輸入自由化 이후 外國 農產物이 물밀듯이 들어온 반면 우리 政府가 우리 農產物이 國際 競爭力이 없다는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政策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農產物 輸入에 따른 貿易特計資金의 규모는 548億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農產物 輸入에 따른 貿易特計資金이 어디에 쓰여졌으며 이에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만가는 農水產業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農漁民의 눈물로 거둬들인 特計資金을 他產業에 轉用했거나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貿易特別會計管理運用要綱에 의하면 關聯對外通商協力 海外市場開拓 輸出商品 品質向上 및 包裝改善에 사용토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農林水產物 輸出의 市場

開拓을 위해 단 한푼도 運用하지 않았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한 答辯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이제 네분 委員님의 質疑가 끝났습니다.

○盧武鉉委員 議事進行 하나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예. 盧武鉉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지금까지 質疑와 答辯이 비교적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決算이라는 것이 기왕에 지나간 일이라는 것 때문에 다소 문제는 지적해도 적당히 答辯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하긴 합니다마는 결국 그래도 좀 진지하게... 우리도 이 質疑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때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政府側에서도 많은 公務員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答辯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答辯이 대단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監査院長께서 答辯하신 중에 혹시 答辯이 고의이든 또는 실수이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마디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즉석에서 法務部長官과 公報處長官에게 각기 資料를 요청을 했는데 公報處長官은 資料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法務部長官께서는 이 시간쯤은 내주실 것 같은데 안내주셔서 그것도 함께 여쭙어 보려고 議事進行 發言을 구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質疑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監査院長께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監査院長께서 答辯하시는 가운데서 소위 獨立機關이라고 말할 수 있는 司法府나 選舉管理委員會 등에 관해서 왜 監査報告書에 게재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金榮度委員께서 質疑를 하셨을 때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實地監査는 現行法인 國家安全企劃部法에 의하여 安企部長에게 所管業務에 대한 監査實施權이 부여되어 있어서 監査院에서는 監査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편의상 안한다는 뜻인지 法

律上만으로는 명료치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역시 速記錄을 보면 法律에 의해서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機關은 法律이 改正되지 않고는 監査院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答辯 부분이 있습니다.

法律에 의해서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機關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 安全企劃部를 말하는 것인지 그 밖에 어떤 機關이 있는지? 그러면 그 機關은 어느 機關인지 이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밝혀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答辯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監査院長이 역시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저쪽에서 나오는 書面으로 監査한다 또는 書面監査 結果 그 機關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느냐의 여부, 평소에 큰 事業이 있는 機關인가 혹은 수시로 그러한 事業이 많은 機關인가에 따라서 實地監査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한다. 人力上 그런 機關에 대해서는 해마다 實地監査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치상으로는 해마다 人力上 그런 機關에 대해서 實地監査를 할 수 없다면 5年이면 5年 3年이면 3年 아니면 특별하게 그 機關이 우리 國民의 관심을 끌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實地監査를 한번씩 함으로써 지금까지 書面으로 제출되고 있는 자료가 적실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할때 檢査의 方法으로 표본추출과 같은 개념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지 않았다면 靑瓦臺에 관해서는 實地監査를 몇년마다 한번씩이나 실시하셨는지 역시 安全企劃部와 國軍機務司에 관해서도 언제 實地監査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答辯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監査院은 會計檢査權도 있지만 職務監察權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職務監察權에서 배제되는 곳은 일부 下級軍部隊 또는 作戰部隊입니다. 保安司가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90年度에 尹錫洋二兵이 폭로한 사건 國民에 대한 查察行爲가 있었다. 해서 대단

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保安司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告訴 告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構造的으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機關에서 이와같은 말썽이 계속 나고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職務監察權을 행사해야 될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블랙리스트事件이 요근래 國政 監査당시에 釜山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國家의 情報機關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는 혐의를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관해서 職務監察이 이루어졌는지 이 점에 관해서도 아울러서 答辯을 해 주시면 그 答辯듣고 한마디 한마디 다시 미흡하면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어제 요구한 資料가 오늘까지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도 무척 유감스럽고 이런 자세로 決算을 監査해서는 정말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形式的인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豫算을 審議할 때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로 監査를 촉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熙杓委員 議事進行 發言주세요.

○委員長 金瑑泰 에. 洪熙杓委員 말씀하세요.

○洪熙杓委員 종합적인 委員님들의 質疑가 끝났습니다.

지금 同僚委員이 추가로 물은 것은 추가로 된 質疑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원활한 會議運營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政府가 會議運營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政府가 答辯해야 되니까 監査院長이 答辯할 부분에 앞서서 答辯하실때 먼저 그 答辯을 지금 추가로 한 것을 해주면 議事進行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도 答辯準備를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停會를 하고 答辯時에 盧委員의 質疑에 答辯하도록 議事進行發言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朴炆秀委員 말씀하세요.

○朴炆秀委員 朴炆秀委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外務部長官과 內務部長官께 좀 드리겠습니다.

紙上에 일부 보도가 된 바도 있지만 우리나라 農漁村 青年이 장가들기가 힘들어 가지고 本委員이 세번에 걸쳐서 中國을 다녀 왔습니다.

현재까지 書面으로 접수되고 現地에서 접수된 사람이 약 760餘名에 달하는 吉林省의 우리 교포처녀들이 韓國으로 시집을 오겠다 그랬는데 지난 8月5日 本委員이 직접 우리나라 총각 10名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맞선을 봐서 7名이 즉석에서 約婚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청을 하려고 수속을 하니까... 물론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中國僑胞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不法滯留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약 1萬2,000餘名이 不法으로 있기 때문에 政府當局에서는 규제를 하고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人倫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7名이라는 총각들이 約婚을 해가지고 초청을 하고 그러면 政府에서 받밧고 나서서 해주지는 못할망정 해가지고 가면 무엇이 잘못됐다 하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外務部長官이나 法務部長官이 이따 答辯하실 때 農漁村 青年 結婚問題가 심각하고 또 中國에 있는 僑胞가 吉林省에만 220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海外僑胞를 얘기할 때는 日本僑胞 60萬 70萬만 얘기하지 中國僑胞 220萬은 그냥 의붓자식 모양으로 내버려 두는데 앞으로 이런 政策關係를 검토하실 단제가 되었다 하는 생각에서 이따 다른 委員님 答辯하실 때 이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아까 盧武鉉委員이 議事進行 發言으로 質疑까지 해 주셨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나중에 政府側 答辯할 적에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法務部長官께서 資料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疏明해 주시고 그리고 朴炆秀委員이 사실 직접적으로 決算하고는 별로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모처럼 質疑를 하셨으니 政府側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答辯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政府側 答辯準備를 위해서 잠시 停會했다가

오후 5時40분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46分 會議中止)

(17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瑑泰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政府側으로부터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淵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어제 會議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質問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쪽에 무슨 委員長이 사전에 말하는 것도 없고 이 양반 묻고 저 양반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會議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委員長께서 특별히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죄송합니다.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監查院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盧武鉉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을...

○監查院長 金永駿 監查院長입니다. 먼저 朴實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國防部の 外資購買契約에 관한 사항입니다. 本件의 내용은 國防部 軍需本部에서 訓練機外의 5種의 軍需裝備에 대한 外資購買契約을 체결하고 先金을 支給하면서 外資購買契約에 따른 절충교역계약은 海外技術의 國內移轉이라든가 부품의 역수출 등 절충교역협상이 本契約 이전에 이루어져서 本契約에 포함시키는 것이 協商에 유리하고 바람직하나 本件 契約裝備는 戰力增強事業의 일환으로 部隊配置가 시급한 실정이었고 절충교역협상이 장기간 소요되어 우선 本契約을 체결하면서 절충교역의 규모만 확정하여 契約을 체결한 것으로서 特定人의 責任을 물을 事案이 아니고 制度改善의 問題라고 판단되어서 외자구매 계약 체결 전에 절충교역협상을 통한 具體的인 內容이 本契約에 포함되도록 절충교역제도를 補完하고 先金支給을 보류하도록 通報한 것입니다.

이 通報에 따라서 國防部에서는 절충교역내용이 確定되지 않으면 아예 本契約 自體가 成立할 수 없도록 關係規定을 補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朴實委員 550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되는 것을 550日 最長期間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監查院長 金永駿 監查日 현재까지 따져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보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기간을 만약에 어떤 배상이라든가 이게 전제된다면 기간을 맞춘다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마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없기때문에 사실대로 550日間이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다음 司正機關인 監查院이 豫備費를 使用한 事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監查院은 1990年度 會計年度中에 豫備費로서 7億7,520萬원을 배정받아 그중 6億7,309萬원을 執行하고 1億210萬원을 使用殘額으로 不用處理 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監查院에서 豫備費를 사용한 사유는 90年度 歲出豫算이 89年12月18日 成立되었으나 豫算成立후인 그해 12月26日 第5局을 新設하고 55名의 職員을 增員함에 따라 이들의 人件費 및 監查活動費로 불가피하게 豫備費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朴實委員 그런데 이것도 꼭 監查院長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政府豫算運用하는 것 이게 사실 法上的의 문제가 있어요. 增員같은 것... 監查院長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政府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豫算을 다 策定해 주었는데 大統領令에 의한 職制改編을 멋대로 한다 말이에요. 멋대로 해 가지고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해 가지고 豫算을 마음대로 써요.

어떤 特定部處같은 경우는 人件費를 豫備費에서 經常豫算의 50%를 機構改編에 따라서 人件費에 갖다 써요. 무슨 局을 새로 新設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늘리고 줄이고 말이에요.

○監查院長 金永駿 앞으로 監查運用に 그런 점을 좀 참작하겠습니다.

○朴實委員 아니 企劃院長官 들어 보세요. 總務處長官이나 여러분들! 그것은 國會의 豫算審議權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國會가 다 끝났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이것 옛날식으로... 政府組織法 14代에서는 꼭 고쳐야 돼요. 이게 豫算 다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局 課를 멋대로

대통령령으로 고쳐가지고 사람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해 가지고 늘리고 멋대로 해 가지고 豫算 다 써 버린다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뭐 增員같은 것 豫備費에서 갖다 썼다 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다음 盧武鉉委員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해서 監査院이 監査를 實施하지 않는 것이 法律上 못하는 것이냐 또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監査에 관한 一般法이라 할 수 있는 監査院法上으로는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으로 國務總理가 소명하는 경우에는 職務監察을 制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國家安全企劃部에 대한 監査制限規定은 없습니다.

그러나 國家安全企劃部法 第10條 내지 12條의 규정에 의하면 國家安全企劃部の 會計檢査와 職務監察은 部長의 責任下에 행하고 安全企劃部の 세출예산은 情報費의 1個科目 總額으로만 編成되어 있으며 豫算總額을 構成하는 예산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서는 자료의 제출, 증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事實上 監査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監査를 實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法律에 의해서 監査를 할 수 없는 機關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어제 法律이 개정되지 않고는 監査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그 취지는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이라든가 國家安全企劃部法에 의해서 安全企劃部の 豫算은 정보비 총액으로만 계상되고 정보비 1個科目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보비 집행에 대한 계산증명은 1차 수령공무원의 영수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영수증만으로는 그 집행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監査實益을 확보할 수 없어서 監査를 사실상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監査院法上 職務監察을 할 수 없는 機關은 軍 機關中 소장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또 중령급 이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國會

및 法院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國務總理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國防部長官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靑瓦臺 安企部 機務司에 대해서 監査를 實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63年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 이제까지 이 機關에 대해서 書面監査는 실시하여 왔으나 實地監査는 實施하지 않았습니니다.

실지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니다만 監査院의 監査對象은 5만4,000여개 機關인데 비하여 監査人員은 470餘名으로 限定된 人力으로 많은 對象을 效率적으로 監査하기 위하여 實地監査選定基準을

첫째 書面檢査結果 問題點이 있다고 判斷되는 機關

둘째 國民經濟 등에 波及影響이 큰 大規模事業執行이 많은 機關

셋째 國民과의 利害關係가 큰 認許可 租稅金融 등 不條理 소지가 많은 機關

넷째 監査情報活動結果 問題點이 있는 事項 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事前에 충분한 計劃을 樹立하여 實地 監査를 實施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靑瓦臺는 그 豫算이 주로 人件費로 구성되어 있고 機務司도 주로 人件費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一般的으로 어떤 部署의 관장업무가 주로 정보수집이라든가 搜查라든가 혹은 기타의 전문적인 科學技術이라든가 전문영역이어서 監査院職務監察遂行이 事實上 어렵다고 생각하는 機關에 대해서는 監査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安企部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法律上의 문제가 있어 監査를 實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아까 議事進行發言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사실에 관한 質疑를 한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議事進行發言으로 했던 이유는 答辯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 答辯을 성실히 하겠다거나 혹은 委員會에서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이 책임있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이었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한 결론에 따라서 委員會에서 적절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거나 사실상의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議事進行을 요구하려고 말씀드렸는데 하다가 보니까 質疑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安全企劃部法이나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에 의해서 監査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監査院長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監査를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監査를 안 하는 다른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部長이 監査權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앞의 부분은 그 다음에는 法律에 의해서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메모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기관이라고 했지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해서는 또는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會計內容에 관해서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 습니다.

▪ 적당히 넘기신 거예요. 어제 답변하시면서 ...

그리고 몇 개의 監査實施基準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法律에 의해서 監査를 실시할 수 없는 기관 法律의 改正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監査院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제가 어제 답변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一問一答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한 것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면 그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安企部는...

○監査院長 金永駿 오늘 답변드린 것이 제 의견입니다.

○盧武鉉委員 安企部에 대해서는 監査의 대상이 되기는 된다는 것이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法律상으로 제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없지요. 監査院法에 明文으로 監査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安全企劃部法 그 자체 11條에 「監査院의 監査에 있어서 國家機密에 속하는 事項에 限하여 資料의 제출·證言 또는 答辯을 拒否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예.

○盧武鉉委員 그러면 國家機密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安全企劃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國家機密인가요? 그렇지 않은지요? 거기 예를 들면 安全企劃部가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짓는다는 것도 거기 豫算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도 國家機密인가요?

그렇습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어제 답변 말이지요. 그것을 굳이 잊어버리고 넘어갈텐데 굳이 메모해 놓았다가 꼭 챙겨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 대단히 성실하지 않은 자세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어떻게 책임없이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어제 저는 사실은 사전에 준비가 전혀없이 一問一答을 하는 과정에서 제 표현의 미숙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이렇게 다시 그러면 몇 가지 따집니다. 몇 가지 따져 보겠습니다.

요컨대 그렇습니다. 書面監査와 實地監査가 監査院法에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따로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 분류되어 있는데 때때로 일정한 기관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實地監査를 배제하고 있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아까 말씀드린 그런...

○盧武鉉委員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쭙어 보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 靑瓦臺가 春秋館이라는 큰 건물을 지었지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그 인근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폐 언론에서는 문제가 됐었지요. 아십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그 인근의 토지는 靑瓦臺의 직접 매입이라기보다도 서울시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저도 신문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靑瓦臺가 監査를 받는 것이 옳으나 그러나 보다 국민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監査院은 靑瓦臺도 물론 安企部도 물론 保安司에까지도 전부 法律上 監査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靑瓦臺는 그와 같은 下級公務員의 직무에 관해서 職務監察을 할 만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한다고 하면 大統領으로서의 一般行政에 관한 지휘 감독과 行政統轄權에 의해서 하실 수 있겠지요.

司正擔當首席秘書라는 직책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特命司正班을 만들어 가지고 下級機關의 公務員들을 전부 사정하는데 이것이 됩니까? 監察에 관한 明文規定도 없이 기관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피래미 송사리들은 가서 책상서랍을 뒤지고 출근하는 사람 호주머니를 뒤지고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靑瓦臺에는 監査院長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靑瓦臺에 대한 監査權 安全企劃部에 대한 監査權 保安司에 대한 監査權을 행사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國民이 政府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 國會에서까지 法律上 못하겠다 法律上 할 수 없는 기관은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따져서 물으니까 표현상의 잘못입니까? 安全企劃部는 豫算이 國家機密에 속하는 豫算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情報費 安全企劃部費 이렇게 하면 전부 끝나버립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거기에 대해서는 法律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이제는 그렇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靑瓦臺 監査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實地監査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書面監査만 계속 하여 오던 기관에 대해서 순기적으로 實地監査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느 쪽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하여튼 그런 순기적인 實地監査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앞으로 지금 法律上 제한이 없는 機務司에 관해서는 적어도 法律上 監査에 제한이 없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法律上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盧武鉉委員 이 機務司에 관해서... (場內騷亂)

○委員長 金瑑泰 議席에서는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업무가 情報蒐集이라든가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질상 監査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機務司에 관해서는 적어도 特別法이 없으니까 機務司에 관해서 實地監査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情報蒐集이라든가 搜查業務 이것은 監査院의 監査로써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 아닙니까?

○盧武鉉委員 搜查業務가 아니고 搜查業務에 사용한 돈을 의미하는 會計監査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직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그 기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職務監察을 하고 그를 통해 기관과 公務員에 관해서 職務監察을 하고 그를 통해서 직무의 향상 개선을 기하는 行政運營의 개선과 향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職務監察 한번도 안하셨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제 6共和國도 되었고 民主化도 되어가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監査院長 金永駿 검토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검토하는데 지금 監査院長의 答辯이 앞으로 이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을 監査院長 혼자서 監査計劃書를 낼 수 없는 것이지요. 監査委員들 決議해야 되는데 監査院長의 견해를 묻습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견해를 묻겠습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答辯을 드러봤자 개인적인 答辯밖에 안되고 역시 監査委員들의 會議에...

○盧武鉉委員 아닙니다. 監査院長職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職을 감당함에 있어서 개인적 소신이 항상 직무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소신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그것은 監査委員 會議의 구성원에 대한 영향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盧武鉉委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監査院長 金永駿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과거에 지금까지 監査하지 않았던 것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監査院長 金永駿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監査院 창설이래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盧武鉉委員 안해왔던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監査院長 金永駿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잘 됐다 못됐다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盧武鉉委員 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정도로 해놓읍시다.

○監査院長 金永駿 예.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法務部長官 아까 資料關係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와서 설명도 하시고 나오신 김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자, 됐습니다. 法務部長官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法務部長官 金洪春 法務部長官입니다. 朴實委員님 盧武鉉委員님 朴兪秀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차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實委員님께서 不動產投機事犯搜查 등 特別搜查活動과 관련하여 豫備費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檢察搜查에 있어서도 豫算에 編成된 本豫算으로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90年度에 豫備費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 경위는 근본적으로 本豫算에 編成된 搜查活動關聯經費가 나라의 財政形便上 충분할 정도로 現實化되어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不動產投機熱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國民經濟秩序를 위협을

했고 國民生活 侵害事犯이 급기야는 犯罪와의 戰爭을 선포할 정도로 극심하였으며 產業現場의 不法暴力 勞使紛糾가 만연이 되어 國民經濟에 큰 위협이 되어서 國民的 우려가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檢察에서는 大檢察廳에 不動產投機事犯과 國民生活 侵害事犯을 집중단속하기 위한 合同搜查本部를 설치하고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犯罪情報와 자료를 수집하고 搜查하는 데 特別勤務를 하는 등 事犯剔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와같이 수사활동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本豫算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豫算當局과 협의하여 豫備費를 사용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豫備費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다짐합니다.

朴委員님께서도 또 特命司正班에서 檢察에 移牒한 자료의 건수에 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檢察에서 그동안 特命司正班으로부터 자료를 移牒받아 犯罪行爲가 있어서 搜查處罰한 것은 12件 21名이며 이 숫자는 檢察에서 搜查立件한 것에 한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6共이후에 靑瓦臺 빙자 사기사건 30件 68名과는 별개의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特命司正班에서 다른 有關機關에 통보하거나 移牒한 숫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제가 答辯드릴 위치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盧武鉉委員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데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盧委員님의 資料提出要求를 받고 확인해 보았더니 지난 번 國政監査時에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 監査資料要求가 있어서 동일한 자료가 既爲 法制司法委員會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취지를 즉시 委員님께 알려드리고자 하였습시다마는 이 會議 시작전에 委員님을 뵈지 못해서 그 뜻을 미처 전달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빠른 시간안에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法制司法委員입니까? 法制司法委員會 자료가 豫決委員들한테 다 지금 송부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法務部長官 金洪春 그래서 그 뜻을 전해서 法司委에 이미 國會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내가 法司委 어디가서 그것을 구합니까?

○法務部長官 金洪春 빠른 시간안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長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개인으로서는 法制司法委員이라 할지라도 豫決委員으로서 자료요청하면 豫決委員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고 法制司法委員會 國監資料가 그것도 法司委 豫算審議 審査資料라면 또 모르겠는데 法制司法委員會의 國監資料가 어떻게 여기 豫決委員한테 당연히 공유될 것이라고...

○法務部長官 金洪春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國會에 제출된 자료가기 때문에 그 취지를 말씀올리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朴奭秀委員님께서서는 中國 國籍僑胞의 약혼 등 초청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委員님의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延邊 僑胞는 우리 同胞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中國 國籍의 外國人이고 中國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와 未修交國인 관계이기때문에 다른 友邦修交國國民의 초청과는 달리 被招請者의 신원조회 등 入國節次에 다소간 번거로운 점이 없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外務部 등 有關機關과 협의해서 人道的 견지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朴 實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瑑泰 補充質疑입니까? 됩니까?

○朴 實委員 補充質疑이든 뭐든 형식이 중요합니까?

法務部長官이 그렇게 答辯하실 줄 알았습니다. 11件에 21名 外에도 다른 많은 資料가 있어서 다른 機關에 警察이라든지 또는

職務에 관련된 關係 部處라든지 靑瓦臺特命司 正班에서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7億2,000萬 원의 돈이 제대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答辯했거든요. 그래서 靑瓦臺特命司正班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靑瓦臺에서 사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答辯順序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答辯順序에 없습니다. 職級에 따라서 제일 나중에 答辯하는가 하고 보았더니 答辯順序에 靑瓦臺는 한 사람도 안 들어 있어요. 約 8億에 가까운 豫備費를 쓴 特命司正班의 책임자가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까 누가 答辯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法務部長官 答辯은 그것으로 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누가 答辯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金瑑泰 副總理가 答辯한다고 합니다.

○朴錫武委員 總理에 대한 質疑인데 副總理가 答辯합니까?

○趙洪奎委員 洪熙杓 委員長代理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委員長이 몰라서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副總理가 答辯한다고 아까 答辯했었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副總理가 答辯하도록 하죠.

○朴 實委員 그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趙洪奎委員 그래서 양해를 못하니깐 靑瓦臺에서 누가 나와서 答辯하라 이것입니다.

○洪熙杓委員 나중에 다 해서도 答辯이 안 나오면 다시 받으세요. 누가 答辯하든 나올 것 아닙니까?

○權達洙委員 追加質疑는 나중에 答辯 다 끝나고 하는 것이지 맨 나중에 추가로 하는 것이 追加質疑인데...

○朴 實委員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法務部長官한테 答辯을 내가 요구한 것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法務部長官은 本委員이 質疑했을 때 예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靑瓦臺司正班에 대해서 다른 件에 대해서 "다른 警察이나 다른 데에서 충분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答辯했습니다.

그러면 8億의 豫備費를 特命司正班에서 사

용한 다른 부분의 內譯에 대해서 靑瓦臺 關係者가 나와서 答辯한다면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法務部長官外에... 法務部長官은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성격은 經濟企劃院長官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經濟企劃院長官은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에 의해서 자기가 요청해서 자기가 받으니까 얼버무리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職務에 관한 것이 豫備費 사용한 것은 經濟企劃院長官이 答辯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靑瓦臺에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瑢泰 이것이 지금 國務委員 政府委員이 出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副總理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豫備費關係 아닙니까?

○朴 實委員 靑瓦臺秘書室의 司正擔當官이 職級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政府委員 아닙니까? 職級이 해당 안되요?

○委員長 金瑢泰 저도 法律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즉각 答辯은 곤란합니다마는 靑瓦臺司正擔當秘書官이 政府委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朴 實委員 아니 首席秘書官이 職級으로 봐 가지고 왜 아닙니까?

○委員長 金瑢泰 그러니까 지금 副總理가 答辯한다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答辯 들어봅시다」하는 委員 있음)

○盧武鉉委員 參考人으로도 불러봅시다.

○委員長 金瑢泰 朴 實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朴 實委員 나와요, 안 나와요?

○委員長 金瑢泰 누구요?

○朴 實委員 靑瓦臺에서 나와서 答辯하느냐 안 하느냐...

○委員長 金瑢泰 靑瓦臺에서 나올 수 없지요.

○朴 實委員 秘書室長도 있지 않아요? 秘書

室長이 나오면 되지 않아요?

○委員長 金瑢泰 國務委員 政府委員이 나와서 答辯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례를 다 조사는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靑瓦臺 關係者가 나와가지고 豫決委에서 答辯한 예를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朴 實委員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國會 運營委員會에서 豫算案 靑瓦臺警護室이나 靑瓦臺秘書室에 대해서 豫算案說明을 누가합니까?

○委員長 金瑢泰 글썄 그것은 運營委員會이고 豫決委員會에서는 저는 그런 前例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豫決委나 運營委나 같은 國會의 常任委員會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아니 이 豫決委員會는 特別委員會 아닙니까?

○朴 實委員 무슨 소리입니까? 常識 아닙니까? 國會에서의 靑瓦臺 警護室이나 秘書室에 대한 豫算案說明과 質疑答辯을 運營委員會에서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왜 靑瓦臺에서 못 나와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委員長 金瑢泰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珥圭 副總理兼企劃院長官입니다.

○朴 實委員 豫決委員會에서 答辯하는 政府委員 따로 있고 常任委員會에서 答辯하는 政府委員 따로 있어요? 확실히 하세요.

○委員長 金瑢泰 答辯하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珥圭 李起彬委員님의 質疑부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첫째 質疑는 政府는 政策推進에 있어 一貫性을 가져야 된다, 특히 지금 현재는 6次 5個年計劃期間이 進行되고 있는 등 政府가 長期計劃을 가지고 있는데 좀더 一貫性있게 政策을 執行해야지 실적 위주로 執行을 하다 보니까 政策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히 經濟政策은 그때그때에 일어나는 短期的 현상이나 部分的 상황만을 보고 政策을 推進할 것이 아니라 항상 長期的으로 또한 부분보다는 全體的 眼目에서 政策이 推進되었을 적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한 國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經濟의 현상은 短期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短期的으로 또는 部門的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政策의 일관성과 短期的인 신축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委員님의 충고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政策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國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님 두번째 質疑는 어제 또 많은 委員이 지적하셨고 다른 委員도 지적을 하셨는데 政府의 經濟豫測能力이 부족해서 政策遂行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그 예가 해마다 계속되는 歲計剩餘金의 발생이 그 예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經濟豫測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는 方案 또 歲計剩餘金의 발생에 따른 追更豫算의 관례화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經濟政策은 그 經濟의 흐름에 대한 예측위에서 政策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經濟企劃院은 內部的 經濟企劃局 및 관련기구 또 經濟企劃院 傘下에 있는 여러 研究機關 또 우리나라의 韓國銀行을 비롯한 調查研究機關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經濟豫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이제는 우리 經濟는 세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 세계의 변화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經濟豫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5·6月頃까지 美國經濟의 전망을 놓고 美國의 대부분의 研究所 및 經濟專門家가 금년 下半期부터는 美國 經濟가 마이너스成長에서 벗어나서 正의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豫測을 대부분이 했습니다마는 結果的으로는 아직도 美國 經濟가 下半期 들어서도 마이너스成長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經濟豫測에서 어려운 점을 더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政府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또 關聯機關과 좀더 긴밀히 협조해서 이와 같은 예측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歲計剩餘金이 발생을 한 점은 그동안 政府

의 歲入豫算推計가 結果的으로 예측이 빗나가서 초과징수가 된 점,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政府는 明年度 豫算編成을 하면서 이와 같은 稅收超過 收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內國稅 歲入을 現實化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한 것도 그와 같은 慣例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李委員님께서 司法施設特別會計와 관련하여 司法施設特別會計의 歲入중 罰科金 및 沒收金의 收入額의 60%에 해당하는 金額을 司法施設特別會計의 歲入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特別會計法上 明文上 規定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精算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司法施設特別會計의 法은 지적하신 대로 罰科金 및 沒收金 收入額의 60%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收入額을 精算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래가 罰科金 및 沒收金을 특별한 사업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쓰는 것은 그 歲入의 성격상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罰科金 및 沒收金은 國家 公權力的 작용에 의해서 수입되는 것을 어떤 특정한 목적의 財源으로 즉 目的稅的 性格으로 하기에는 그 財源의 성격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열악한 司法施設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한 政策的 배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司法施設特別會計가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李委員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豫算會計法上 數년에 걸쳐서 이 經費가 지출되는데 이것을 每年度 분할해서 豫算을 편성을 하고 특히 이것이 다음 年度로 이월 집행되고 있는 점, 豫算制度의 여러가지 問題點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政府 事業이 과거와는 달리 工事規模가 커지고 이래서 큰 工事의 경우에는 한 해에 이것이 완공되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는 그런 事業費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豫算會計法 精神上 이것이 원래는 繼續費로 이런 점이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豫算編成上 이런 전부를 繼續費로 하지 못하

고 있는 점, 우리 豫算編成上 하나의 問題點으로 되어 있고 長期的으로 우리 현재의 豫算會計制度는 이런 점과 關係해 가지고 한번 큰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豫算會計法은 政府 수립 이후 60年代에 와서 한번 改正이 되었습니다마는 政府 수립 당시 우리 財政規模가 아주 소규모이고 政府 財政活動이 아주 국한되어 있고 또 政府의 사업이 소규모였을 때 만들었던 制度입니다. 이제 政府의 활동범위가 이렇게 커지고 또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하는데 있어서 豫算의 좀더 효율적 編成을 위해 현재의 豫算會計制度를 한번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明年에 經濟企劃院에서는 外國에 豫算制度 改革을 위한 專門調査團을 파견을 해서 明年中에는 豫算會計制度의 根本的 改革案을 마련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 實委員께서 지적을 하신 말씀이 최근 經濟의 어려움 특히 國際收支赤字 등 經濟的 어려움은 바로 90年度 豫算의 運用이 잘못되어 온 것이 아니냐 최근 國際收支 赤字를 가져오는데에 대한 財政運用에서의 그 요인이 뭐라고 보느냐하는 말씀이 제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綜合財政收支가 90年度에 1兆5,872億원으로서 昨年度보다 대폭적으로 統合財政收支가 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國際收支赤字의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제쳤습니다.

최근 우리 經濟가 계속 物價壓力과 國際收支赤字의 확대라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財政運用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國際收支赤字의 확대는 그동안 높은 성장에 따른 國內의 消費增加 또 不動產投機 등으로 인한 不勞所得의 增加 또 輸入開放에 따른 輸入의 展示效果 등이 함께 어울려지고 또 相對的으로 우리 輸出產業이 輸入增加率만큼 늘지 못하는 등 이런 전체적인 원인이 모아져서 오늘의 國際收支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國際收支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國內의 總需要가 철저히 관리되어 가지고 輸入需要의 역제를 막아야 하고 輸出產業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輸出을 늘려야만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綜合財政收支가 90年度에 1兆5,872億원으로서 89年度보다는 확대되어온 것은 朴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것이 반드시 財政赤字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兆5,872億원이 되어서 89年보다 대폭 늘었습니다마는 1兆5,872億원 중 이중에 상당한 부분은 糧穀管理基金의 赤字 즉 우리가 秋穀收買價 引上和 秋穀收買量의 증가로 인해서 糧穀管理基金에서 糧穀證券發行 등 糧穀管理基金에서의 證券發行 등으로 1兆3,239億원이 증가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또 89年보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國民住宅債券입니다. 우리 國民住宅을 짓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國民住宅債券을 政府가 소화 또는 인수시키고 있는 것이 그동안 住宅景氣의 과열 등으로 住宅債券基金이 89年보다는 원채 많이 발행이 된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糧穀管理基金赤字는 하나의 財政赤字의 요인이 되고 住宅債券의 발행이 住宅景氣를 촉진시키는 등 원인이 된 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糧穀管理特別會計는 89年度 90年度는 다 높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90年度에만 그랬다고 그것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러니까 糧穀管理基金과 住宅基金 그 둘이 합쳐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質疑 역시 다른 委員들이 많이 지적하신 대로 歲計剩餘金이 이렇게 생긴 것은 政府가 豫算規模를 축소하기 위해서 歲入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여 잡은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追加豫算의 編成은 本豫算과 달리 財政의 效率性을 저하하니까 이런 점 시정을 하라 하는 말씀이 제쳤습니다.

結果的으로 과거 몇년간 政府 豫算으로 책정되어 있는 歲入보다 실제 徵收額이 超過徵收가 되어서 그것이 歲計剩餘金으로 나타났고 그 歲計剩餘金을 재원으로 해서 追加豫算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超過徵收가 되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歲入推計를 잘못된 데 이유가 있습니다. 歲入推計를 잘못하는데 혹시 좀더 歲入을 의욕적으로 더 들어올테니까 들어오는데로 최대한 歲入展

望을 하여야 할터인데 그동안 政府는 豫算規模의 팽창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있던 면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는 豫算이 없었는데 決算에서는 歲入으로 計上을 했다는 豫算決算委員會 專門委員의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豫算運用에서 아마 90年度에 처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特別會計를 신설하는 경우는 豫算과 함께 特別會計法도 같이 國會에 제출되어서 特別會計法과 豫算이 함께 國會를 통과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 國會의 豫算審議 또는 政府의 豫算提出의 관례였었는데 不動產投機 抑制 施策 관련해 土地管理및土地均衡開發特別會計가 90年7月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豫算과 함께 法案이 제출되지 못해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은 이것이 歲出같으면 國會의 豫算審議權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歲入인데 法律上 一般會計 歲入이 아닌 것만은 또 틀림이 없습니다. 法은 이미 實定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法律上 그 歲入이 一般會計歲入이 아닌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特別會計는 法만 있지 國會에서 特別會計 豫算을 통과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소 비정상적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歲出이 아니고 政府가 받는 歲入이기 때문에 一般會計歲入이 아니니까 원 所管 特別會計로 歲入措置를 다소 비정상적이었지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特別會計法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豫算과 함께 제출되어 가지고 豫算이 성립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 實委員 그러니까 國會法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이것은 特別會計法 國會立法을 할 적에도 당연히 이렇게 되면 政府는 特別會計法이 통과가 되면은 政府는 追加豫算을 해 가지고 豫算도 함께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朴 實委員 國會法에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것은 審議할 수 없도록 國會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國會에서 나왔으면 이렇게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편법적으로 여러분이 한 것이예요.

(金瑤泰委員長, 洪熙杓幹事와 司會交代)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런데 하나 양해해 주실 것은 歲出을 이렇게 國會에서 議決없이 썼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政府에 들어오는 歲入을 法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데 國會의 豫算審議하고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決算制度상 收納機關과 決算機關을 분리하지 않은 문제는 이것은 전부 다 財務部長官 所管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財務部長官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委員님께서 專門委員의 지적 말씀에서도 있었지마는 豫算會計法上 項 이상은 立法科目인데 이것을 歲入에 있어 行政府가 項을 新設해 가지고 歲入處理를 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豫算會計法 解釋上 朴委員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行政府가 이렇게 처리했던 이유는 豫算이 歲入 歲出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歲入豫算의 法律的 성격이 歲出과는 전혀달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歲入의 所得稅 얼마하고 歲入으로 計上을 했는데 歲計剩餘金이 생깁니다. 超過徵收가 왜가지고 더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歲入豫算이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租稅法定主義 원칙에 의해 가지고 稅法이 결정하는 것이지 豫算에 計上된 그 歲入 豫算額은 歲出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歲入項目에 대한 項目處理를 좀 제대로 하느라고 이와 같은 項의 신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豫算編成 技術上 이 점을 사전에 이런 項目을 미리 넣어 가지고 科目措置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은 豫算編成 技術上에 미숙이 있었다 하는 점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全部處에 걸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豫算編成 技術上 좀 미숙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

인을 합니다.

○朴 實委員 이것도 세분해서 해주면 좋지요. 사실은 말씀대로... 그러나 項目의 雜收入이라든지 다른 데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니깐 좀 이상해 보여서 그런 것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歲出같은 이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農地管理基金 農漁村地域開發基金 農業機械化資金 및 農漁民後繼者育成基金 農漁村開發基金 등의 相互移用은 不法인 豫算會計法違反이 아닌가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또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을 國會에서 立法을 하면서 바로 이와같은 移用을 法律로 附則에서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즉 農漁村地域開發基金에 대한 財政投融資特別會計 出捐金中 1,000億원은 農地管理基金에 대한 出捐金으로 본다 또 그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國會가 통과한 法律의 附則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서 그 基金間 移用 또는 轉用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法律規定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朴 實委員 이것 사실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豫算과 法律이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豫算總則에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편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것 자체가 편법이나 하는 것은 별개 문제고 그렇다면 國會에서 審議할 때 經濟企劃院長官의 의사개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러니까 豫算은 확정이고 그 후에 이 關聯法律이 전부 다 國會에서 制定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豫算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法律에 의해서는 行政府가 國會에서 議決해 준 豫算을 法律의 規定이 있을 경우에는 移用 또는 轉用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저의 法律規定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상적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追加 豫算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法律에 의해서 移用 또는 轉用이 規定이 되어 있는

것은 行政府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外務部所管 在外公館 國庫債務負擔行爲에서 豫算에 計上된 362億원보다 많은 400億원을 집행하여 換差損을 빼고도 4億8,000을 더 집행한 것은 豫算會計法上 위반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決算書를 보시면 원래가 在外公館 買入事業이었기 때문에 豫算上 이것은 표시화폐가 弗貨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당시 豫算의 기준이 되는 換率로 해서 元貨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행을 하는 豫算의 화폐표시가 弗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弗貨 상당액 4,751萬2,000弗 그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해서 配定을 하고 집행했는데 換差 이상으로 된 것은 아닌데 또 하나 말씀이 드리면 이 決算書 國家債務行爲에 관한 總 計算書 決算書에 註標示를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체는 달러로 4,751萬2,000弗 이것을 배정을 하고 이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換率은 715원이었던 것이 실제 決算上 換率은 719원20전이 되어 가지고 4億8,000만권의 元貨금액으로는 초과가 됐습니다. 弗貨표시로는 똑 같고 그런데 決算上 표시를 할 적에 조금 오해가 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朴 實委員 그러면 그것 가지고 國會에서는 검토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 가는 것이 大韓國民이 하는 일입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이것은 行政府가 제출한 決算書書類標示가 專門委員도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된 점을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가만이 國庫債務負擔行爲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專門委員의 지적인데... 民間研究機關인 韓國科學技術研究院에 대한 出捐金을 國庫債務負擔行爲로 計上을 하고 그 國庫債務負擔에 따라서 大德研究團地 移轉費로 科學技術院이 이전에 따른 공사를 외상으로 했습니다. 즉 出捐金을 國庫債務負擔行爲로 하고 그 國庫債務負擔行爲에 근거를 해가지고 科學技術院이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91年度 豫算에 그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國庫債務負擔行爲는 실제 債務가 이것은 出捐金이니까 주겠다 하는 약속을 國庫債務負擔行爲로 豫算에 計上된 것은 과거의 관례나 실제 집행면에서 반드시 정상적이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國庫債務負擔行爲를 이와 같은 出捐金 등의 國庫債務負擔行爲가 計上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朴 實委員 債務負擔行爲한 것은 大德研究團地 아닙니까. 국가가 아니고...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政府가 科學技術院의 出捐金을 주는데 현금으로 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來年에 갓아 주겠다 하는 債務를 國會議決을 맡고 있습니다.

科學技術院이 그 國家로부터의 채권이 있으니까 工事を 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 豫算에 갓아 주는 것인데 여하간 國庫債務負擔行爲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하시기를 一般會計에서 移用 또는 移替金額이 每年 확대되고 있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國會에서 議決된 豫算은 가능하면 移用이나 移替없이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年度도중 法令의 改正 또는 職制의 改編 등에 의해 가지고 移替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났는데 政府는 財政運用에 있어서 가능한 限, 移用 또는 移替가 이렇게 증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外務部所管으로 지출된 太平洋沿岸 4 個國 巡訪經費에 대한 豫備費支出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大統領의 海外巡訪에 따른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豫備費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 實委員 집행된 것이니까 집행된 細部內譯을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지요. 왜 썼느냐가 아니라 쓴 內譯이 어떻게 들어 갔는가 그것 좀 보자 이런 얘기에요. 집행이 이리 된 것이니까... 아무리 國家元首에 관한 것이라도 이미 집행이 된 것이니까

그 내용 좀 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大統領 禮遇는 잘 했든지 못했든지 더해 드러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細目을 좀 내달라는 것이니까 書面으로 해주세 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나중에 이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國家安全保障活動에 관한 經費에 관해서 朴委員 지적이 계셨고 朴錫武委員께서도 같은 趣旨의 指摘이 계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憲法 違反與否에 관한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린 대로 國家安全保障을 위한 總額計算과 豫備費는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해서 總額으로 計算하고 또한 그 規定에 의해서 經濟企劃院所管 豫備費로 支出이 되고 있습니다. 現行法上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與野間 많은 論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憲法問題에 관해서는 제가 그런 憲法의 違憲與否는 말할 만한 그런 專門的 知識도 없습디다마는 참고로 다른 外國에서도 똑같이 安全保障에 관한 活動費에 관해서는 이와같은 特例措置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그런데 말이지요 國會가 經常費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人件費 등 기밀에 속하지 않은 部分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되겠어요? 子算을 編成하고 執行하는 長官의 立場에서 이런 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國家安全保障이라는 特別한 機能 때문에 이와같은 特例措置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國家安全保障에 관한 것은 全部 있지요. 어떤 特定機關만 합니까? 우리가 60萬을 維持하는 國군의 국방비도 지금 다 공개되는 판국이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면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래서 安全企劃部도 지금...

○朴 實委員 經濟企劃院長官이 要請해 가지고

經濟企劃院長官이 承認하는 그 절차행위도 우스울 뿐만 아니라 經濟企劃院長官도 모르고 申請을 했다가 또 經濟企劃院長官이 도장을 찍는 그런 豫算執行方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서 되는 일이에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特例法에 의해서 總額으로 취급이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國家安全企劃部 所管으로 된 豫算도 國會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國防委에서 審議가 되고 있습니다.

○朴 實委員 營繕費가 조금 있다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하여튼 고쳐야 되지요, 없애야 되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이 문제는 國會에서 오랫동안 情報委員會 설치 등을 비롯해서 가지고 與野間에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朴委員님께서 10·13 犯罪의 戰爭 宣布를 해 놓고 한달 후에 가서 豫算措置를 하려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전시효과만 내고 뒤에 가서 서둘러 豫算措置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제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公共秩序의 유지와 國民의 安寧秩序를 유지하는 것은 國家 公權力의 기본적 責任이고 法務部나 內務部 등 關聯機關은 거기에 관한 所要豫算이 計上이 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10月13日 政府는 특별히 犯罪의 戰爭을 선포하여 종래에 하고 있던 行政과는 달리 總動員體制를 갖추어서 이것을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래에 하던 豫算으로의 措置만 가지고는 여러 곳에서 평상시보다는 豫算의 부족현상이 났습니다.

즉 그래서 원래 各 部處에 이와같은 豫算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措置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초과되는 費用을 豫備費로 냈고 또 과거에 總理室이라든가 公報處 教育部 등은 이와같은 데에 관한 豫算이 재상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 그런 部處의 總理室의 총괄조정 또는 여타 部處는 다른 측면에서도 이것은 國民的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런 活動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支出이 되어서 豫備費로 보충적으로 豫備費가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錫武委員님 質疑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朴 實委員 그리고 靑瓦臺 부분 答辯하신다고 그랬으니까 靑瓦臺秘書室에서 特命司正班 活動에 대해서 8億 豫備費가 다 쓴 것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런데 法務部長官은 11件 21名의 資料를 받아서 그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는 바가 없다고 그래서 그 內容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副總理가 答辯하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숫자놀이 한 대로 다른 부분이 안 나오면 11件 21名만 가지고 8億을 썼다면 1件當 몇 千萬원이 들어 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밖의 豫備費 支出內譯이나 活動 實績에 대해서 與黨側의 희망대로 副總理가 대신 答辯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해주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90年度 一般會計豫備費로서 經濟企劃院은 靑瓦臺로부터 5.7大統領 特別談話에 따른 後續對策 수행을 위한 特別司正班 설치에 따른 所要經費 7億 2,400萬원의 豫備費 要求를 받아서 國務會議 決定을 거쳐 支出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全額 情報費로 支出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情報費는 그 내역이 별도로 내역은 없고 情報費로 支出되어 있고 당시의 大統領特別談話에 대한 後續措置를 이행하기 위해서 靑瓦臺內에 설치되어 있는 特別司正班의 운영에 이와같은 추가적인 所要經費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서 政府는 豫備費를 支出을 했습니다.

○朴 實委員 왜 豫備費를 支出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쓴 중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로서 法務部는 이렇게 해서 11件的 21名을 조사해서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밖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조금 더 具體的인 內容에 대해서는 關聯機關과 협조해 가지고 다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朴 實委員 副總理가 答辯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與黨側에서 하라고 하나까 물어보는 것이예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그것은 아마 委員長께서 저 보고 答辯하라고 그런 것은 豫備費는 일단 主務部處가 豫備費所要가 생기는 경우 經濟企劃院에 豫備費 요구를 하고 經濟企劃院에서 審査를 거쳐 國務會議 통과를 해서 支出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 보고...

○趙洪奎委員 내용도 모르고 決算報告를 받았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이것이 하나 經費의 性質上...

○朴 實委員 왜 支出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經濟企劃院長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깐 그것을 썼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까 무슨 성과를 냈는지 國會에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꼭 그점은 關聯機關으로부터 다시 한번 협조를 받아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朴 實委員 언제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협조가 되는 대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 일부 계층의 과소비는 輸入開放措置 또는 土地公概念 등 不動產投機抑制政策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의 經濟的 어려움 즉, 物價壓力과 國際收支 압박 등은 이것이 그동안 우리 經濟가 高度成長을 해 오고 또 그 高度成長이 民間消費 建設投資 등 주로 內需의 增加에 의해서 成長이 주도되었고 또 한쪽 편에서는 높은 賃金上昇이 우리 輸出產業의 競爭力을 계속 약화시키는 등 이와같은 전반적 요인이 복합되어서 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政府로서는 그 동안 經濟施策 運營에 대해서 최근의 經濟, 物價安定 및 國際收支 惡化에 대해서 國民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政府는 經濟政策의 最優先順位를 物價安定에 두고 또한 國際收支 改善을 위해서는 우리 輸出產業의 競爭力 強化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競爭力 強化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

니다.

다음 朴委員은 여전히 90年度 豫算 運用 특히 歲計剩餘金의 발생은 國民 부담의 가중과 追更豫算의 편성으로 財政運營의 效率性을 저해한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 다른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이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委員에 대한 質疑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문제는요, 다른 委員들의 質疑의 答辯으로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本委員이 주장하는 것은 追更編成을 위한 稅收 超過의 推計 예상을 어떻게 보면 지금 制度化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價行化 政策化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13代 國會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豫算規模가 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租稅法定主義에서 稅金이 얼마나 들어 오느냐 하는 國民의 租稅負擔을 財源으로 해서 歲出豫算이 編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每年 財政 規模는 절대 늘려서는 안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租稅는 租稅法定主義에 의해서 稅金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같은 豫算編成으로 인해 每年 歲計剩餘金이 발생되고 追更編成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來年度에는 정말 저희들로서는 歲入을 推計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現實化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國內稅 增加率이 과거의 本豫算 對比 增加率보다 높으니까 차꾸 膨脹豫算이라고 여러 委員들이 차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追更하고 對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崔鳳九委員 지금 副總理의 答辯은 조금 수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政府 與黨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野黨에서는 每年度마다 稅法 改正할 때 所得稅率을 引下해라, 말하자면 租稅가 너무 팽창되니까, 國民의 稅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해서 附加價値稅는 8% 이하로

引下해라, 지금 今年度도 附加價值稅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그것 2%만 引下하면 2兆정도 稅收에서 말하자면 歲入이 줄어들니다.

그 다음에 所得稅法도 改正하여 勤勞所得稅의 稅 부담을 낮춰라, 農地稅도 稅率을 낮춰라, 野黨은 始終一貫 13代 國會에 들어와서 租稅 收入을 낮춰 健全財政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膨脹豫算이 안 돼가지고 經濟가 안정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마다 주장하고 있는데 政府쪽이나 與黨쪽에서 유감스럽게도 野黨이 주장하는 稅法改正案을 안 받아줘 해마다 租稅 收入이 늘어 歲計剩餘金이 생기고 膨脹豫算이 되게끔 한 것이고 또 그것을 바꾸어서 力說的으로 歲計剩餘金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논을 더 쓰겠다 하는 그 豫算 발상이 이번 92年度 豫算編成指針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租稅負擔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租稅負擔은 그대로 놔두고 歲出만 결국 늘인다는 것은 結論적으로 歲計剩餘金이 발생하지 않기는 않지요. 計算上으로 앓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豫算 따질 때 또 따지고 말씀을 조금 修正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예.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다음 세번째 質疑는...

○朴錫武委員 지금 副總理께서요 副總理께서 答辯하시는데 지난번에 本會議場에서 經濟質問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도 副總理께서 答辯하신 一貫된 내용은 하여튼 來년에는 그런 追更을 않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歲計剩餘金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차례 1년도 한차례 내지 두차례 세차례 이렇게 追更을 編成하다 보니까 各 行政部處에서는 追更編成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가지고 豫算審議할 때마다 委員會에서 豫算審議를 하면서 보면 이런 豫算은 本豫算에서 넣어가지고 經濟企劃院에서 따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豫算이 削減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번에 못땃지만 來년에 追更이라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答辯합니다. 關係官들이...

그래서 일종의 追更이 쉽게 말하면 하나의 관례화되어 버렸고 하나의 制度化되어 버린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經濟企劃院長官께서 答辯하신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來年에도 追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예고하고 계세요. 答辯중에...

그런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問題는 방금 우리 崔鳳九 委員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政府 與黨이 野黨의 주장을 받아 들여가지고 모든 稅法을 빨리 改正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응할 수 있는 政府의 태도는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答辯해 보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歲計剩餘金 發生은 稅法에 대해 저희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의 租稅負擔率이 GNP에 대한 負擔率이 약 19% 수준으로 계속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政府 財政으로써 農村 社會間接資本 環境등 政府財政이 제대로 못하는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더욱더 擴大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社會保障問題까지도 이제는 계속 擴大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하에서 稅金은 계속 깎자 財政의 활동은 늘리자 그러면 길은 借入金을 늘여서 赤字財政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政府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經濟物價는 견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 租稅負擔率은 조금씩 높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稅法改正에 의한 큰 稅收의 결함을 내는 데 대해서는 政府는 朴委員님하고 견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歲計剩餘金 發生에 관해서 꼭 이 기회에 하나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來年度에 歲計剩餘金이 즉 今年度 歲計剩餘金이 발생하면은 추경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제가 지금 歲計剩餘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는 92年度 豫算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今年度 豫算은 이미 편성 執行이 되고 있습니다. 參考로 그 점을 혹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委員님 세번째 質疑은 經濟企劃院의 기능과 關聯해가지고 지적 말씀이 계시면서

靑瓦臺에 設置되어 있는 社會間接資本企劃團과 副總理가 委員長으로 되어 있는 社會間接資本投資調整委員會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社會間接資本投資企劃團과 投資調整委員會가 생겼던 경위는 잘 아시다시피 社會間接資本이 너무도 부족해 우리 産業活動과 國民生活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위한 長期計劃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많은 部處와 關聯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長期計劃을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長期計劃을 마련하는 各 部處와의 의견 調整 등등을 위해가지고 靑瓦臺內에 社會間接資本企劃團을 설치하여 社會間接資本 投資擴大를 위한 長期計劃, 그 다음에 投資所要, 長期的 投資所要 財源措置 등 비교적 長期的 對策을 기획단에서 하고 제가 委員長으로 있는 投資調整委員會는 그중에서 年次計劃을 우리가 調整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業務가 分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韓·蘇經協과 關係해가지고 經濟企劃院이 政策樹立過程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韓·蘇經協뿐만 아니라 對外經濟協力分野는 물론 外交의 窓口는 外務部가 對外的 窓口가 되어서 對外的 교섭을 합니다. 마는 對外經濟協力問題는 거의 대부분 많은 經濟部處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經濟企劃院內에는 1級公務員으로 되어 있는 對外政策調整室이 있고 1級公務員으로 室長을 任命해서 國內의인 對外協力的 調整에 관한 事項은 經濟企劃院 主管下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最終的인 우리 政府를 代表하는 外交的 窓口는 外務部가 遂行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亨午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質問...

○朴錫武委員 經協資金의 償還展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현재 이것은 長期... 償還은 자금 消費財借款과 輸出入銀行의 長期延拂輸出資金으로 區分이 되어있고 이것은 償還期間이 長期로 되어있어서 최근의 蘇聯의 事態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政府로서는 최근의 蘇聯事態의 變化 등 때문에 當初 韓·蘇經協協定을 체결해 가지고 蘇聯政府로부터의 保證書 등을 徵求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시 새롭게 최근의 蘇聯의 政治的 變革이 있어 追加的으로 償還保證에 대한 蘇聯政府로부터의 追加的 補完措置를 마련해서 현재 經協業務가 執行이 되고 있습니다.

朴亨午委員님 質問은 90年度 豫算中 農水産部豫算에서도 57億원이나 하는 豫算을 豫算節減計劃의 일환으로 이것을 節減한 것은 農漁村의 어려운 사정 또 農漁村에 支援金의 擴大등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年度 政府는 좀더 政府 스스로 勤儉節約하는 그런 垂範을 보이자 그래가지고 確定된 豫算의 節減計劃을 汎政府의으로 樹立을 해서 執行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一律的으로 적용을 하게 된 결과 農林水産部所管에서의 아주 상당히 시급한 支援이 필요한 分野에서도 豫算節減이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亨午委員 副總理! 이것이 아시다시피 農村問題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一律的으로 하기보다는 選別을 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하셔야지 이것을 一律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당면해 있는 하나의 어려운 農政에까지 減額을 한다 하면 이것은 經濟發展에 큰 차질이 나올 것이 아니냐.....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朴委員님! 그 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같습니다. 어차피 節減을 하고 그 다음에 그 豫算을 또 計上해 주어야 할 豫算같으면 이렇게 節減對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政府가 豫算節減運營計劃을 하는데에서도 이와같이 節減할 수 없는 分野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亨午委員 副總理,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잘 먹으려다가 지레 굶어죽잖아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실령 政府가 豫算執行에 있어서 財政運用에서 節減計劃을 마련할 때에도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糧穀管理基金의 缺損은 이것은 農民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消費者도 모두

惠澤을 보고 있는데 農民에 주는 惠澤이 얼마나 되고 消費者에게 惠澤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리 糧穀管理基金은 비싸게 收買하여 또 오랫동안 保管을 하고 또 保管費用이 들고 그대신 放出되는 價格은 收買價格보다도 싼 값으로 내서 이른 바 二重價格이 되어가지고 糧穀管理基金에는 지적하신 대로 昨年 한해만 하더라도 7,400億의 缺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그렇게 함으로써 消費者도 혜택을 보고 農民에게는 비싼 값으로 收買해서 消費者 農民 공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느 쪽에 얼마씩 혜택이 가느냐 하는 計算은 저희들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計算해서 가지고 農民에게 生産者에게 최대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農政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計算을 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가정을 놓고 計算이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쉽게 計算이 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亨午委員 좀 복잡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결국 政策의 기초가 되지 않느냐?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다음 農林水産部豫算中에서 既存豫算을 災害對策費로 充當을 했는데 왜 災害對策費는 豫備費에서 다 支出을 하지 既存豫算에서 充當을 했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災害對策을 위해 豫備費에 災害對策으로만 쓰여지는 豫備費가 있습니다.

그러나 災害가 나는 경우 政府는 豫備費로만 다 充當을 해가지고 도저히 그 豫備費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災害가 나면 既存豫算에서 轉用을 하거나 돌려 쓸 수 있는 部分을 法律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일단 既存豫算을 가지고 災害復舊에 臨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돈을 災害對策豫備費에서 支出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災害가 나는 경우에는 부득이 既存豫算中 轉用 가능한 分野가 이렇게 復舊費로 轉用될 수밖에 없는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亨午委員 그런데 그런 형편이라든지 그 그런 方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UR協商에 의해서 다른 分野가 전부가 開放이 됩니까마는 유독히 農産物에 있어서는 基盤造成이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朴亨午委員 金融이라든지 서비스라든가 運輸라든가 다 들어오는데 다 開放이 되는데 農村만은 이것이 開放이 되었을 때는 生死의 하나의 위기에 처한다는 이런 狀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農水産分野에 대한 豫算은 節減을 하거나 다른 一般豫算을 다른 用途로 轉用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문제의 하나란 말씀이에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朴委員님의 말씀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兆원의 農漁村構造改善對策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虛構의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農林委員이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內容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42兆원의 農漁村構造改善10年計劃은 具體的인 事業計劃에 따라서 그 所要額을 計上한 것이고 明年부터 그 1次年度 該當分을 計上을 하고 있어서 政府로서는 반드시 農民의 農業構造改善을 促進하기 위해서 42兆 이 計劃은 반드시 실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野黨에서 提示하고 있는 秋穀收買를 하려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追加負擔의 資源檢出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朴亨午委員 資源檢出이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珏圭 예. 지금 民主黨에서 주장하시는 秋穀量과 收買價를 충족하기 위한 追加負擔의 資源檢出에 대한 財源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政府는 850萬石 收買 그 다음에 一般벼 7% 인상으로 한 총 850萬石을 수매하기 위한 財源은 1兆 7,300億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財源이 마련되어 있기는 750萬石분밖에 마련이 안되어 있습

니다.

그것은 지금 追加豫算에서 糧穀管理基金의 出捐金으로 주었던 2,500億 糧穀管理基金에서 自體財源 그러고도 7,500億원을 今年度에 新規로 財政證券을 발행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農協으로 하여금 100萬石을 추가하도록 해서 2,100億을 農協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850萬石 財源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는 明年度 糧穀管理基金出捐金 3,000億도 明年에 早期配定해서 明年 1·2月中 수매하는 財源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50萬石 이상 수매할 수 있는 財源捻出方案은 현재로서는 政府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統一에 대비하는 점까지 고려해서 우리의 適正在庫量을 얼마로 보느냐 하는 말씀이 제셨습니다.

일단 政府의 適正在庫量은 그 나라의 糧穀消費 형태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마는 참고로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달 내지 석달의 在庫를 갖는 것이 적정하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로서는 約 600萬石 내지 700萬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政府는 지금 1,400萬石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委員님 지적말씀은 앞으로 統一이 되는 경우 以北은 상당한 食糧不足現象이 있으니 거기에서 대비해서도 政府는 在庫를 적어도 1,000萬石 이상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제셨는데 물론 그런 점 政府로서도 우리가 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까마는 統一에 대비하고 문제에 관하여서는 政府로서는 좀더 長期的인 方向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구상 대비하는 여러가지 追加的 財源 등에 관해서는 좀더 현재의 南北關係의 進退을 보아가면서 長期的 課題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農產物輸入에 부과되는 特惠資金使用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所管部處가 商工部長官이고 저로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商工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朴亨午委員 副總理! 지금 10萬t이면 몇

石입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10萬t이면 70萬石입니다.

○朴亨午委員 70萬石이지요? 그 10萬t을 以北에 무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일단 우리 民間業界가 10萬t을 以北에 반출하는 그런 契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그런데 5,000t만 나가고 9萬5,000t이 안 나가 있던 말씀이예요.

그러면 以北이 食糧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 거든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朴亨午委員 거기에 대비한다고 하면 사실 統一도 달러가 外貨가 무기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西獨의 統一이 統獨이 되기까지에 있어서의 西獨이 얼마만큼 蘇聯에 돈을 많이 주었느냐 하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食糧備蓄이라는 것은 統一次元에서도 커다란 잠재력의 하나가 되는데 食糧이 지금 同族인데 뻘히 없는 것을 알면서 뭐 1,500萬이라든가 1,000萬石정도 비축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돈의 낭비는 아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에 대한 答辯을 하시고 또 다음에 보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統一에 대비해서는 물론 以北의 쌀 그 밖에 여러가지 우리가 東·西獨 統合에서 오는 西獨의 엄청난 재정부담 등을 우리가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南北關係가 進退되는 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長期的으로 쌀을 포함해서 長期的 과제로 研究하고 檢討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亨午委員 쌀이라고 하는 것은 食糧이 生命體가 아닙니까? 사람이 섭취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저기에서 1,000萬石밖에 生産을 못하고 있으니 食糧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

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朴委員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내려가시려고 할 것이 아니고答辯을 더 하면서 들어주세요. 무엇이 그리 급해서 그러니까?

糧穀管理基金에 대해서 잠깐 몇가지 묻겠습니다. 補充하겠습니다.

實質的인 糧穀管理基金의 缺損額은 7,024億 원이 정확한 수치이며 4兆4,774億원은 단순한 缺損의 合計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지금 糧穀管理基金缺損額은 7,000億이라고 하는 것은 90年度 年해의 缺損額입니다. 그 다음에 4兆4,700億 하는 것은 90年末까지의 缺損累計額을 이제까지 꼭 糧穀管理基金에 운영되어 왔던...

○朴亨午委員 그래서 얘기인데요. 이미 管理基金이라든가 證券으로 해서 사실은 糧特赤字를 이미 다 처분이 整理가 되었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아니지요. 糧穀管理證券은 앞으로 上환을 해야지요.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글썽 上환 안된 것이 문제입니다마는 일응 남아 있는 것은 7,024億밖에 없다 이것이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90年 年해만 赤字 난 것이 7,000億이 났고 今年度 赤字가 約 7,700億인가로 豫算을 하고 있고 昨年末까지의 糧穀管理基金의 赤字累計는 4兆7,000億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그것이 累計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累計입니다. 그중에 政府는 每年 그 赤字를 補填해 주기 위해서...

○朴亨午委員 補填이 다 되었지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아직 다 안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조금 남아 있지요. 4,000億이 아니고 그 累計지요. 남아 있는 그것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예, 알고 있습니다.

○朴亨午委員 그리고 政府가 繼續的으로 糧特

赤字를 4兆4,774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방금 總理께서 말씀하시다시피 國民들에게 숫자를 통한 經濟的인 위협이라고 보는데 이 점 長官이 명심하셔야 되겠고 또한 糧穀管理基金의 缺損發生 이유중 하나는 糧穀證券의 發行으로 인한 元利金 上환에 있어서 90年末의 利子金額은 2,060億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糧穀證券에 대한 利子가...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糧穀證券의 利子是 아마 今年 年해만 해도 4,000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간단합니다. 昨年末 現在 糧穀證券發行 殘高가 3兆7,000億입니다. 90年末... 그 利子が 13%입니다. 간단히 計算이 나옵니다.

○朴亨午委員 많지요. 많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주머니 돈이 삼지돈 삼지돈이 주머니돈이라고 그것은 國家의 負債란 말이에요. 糧穀證券의 元利金 償還은 國家의 債務이므로 豫算會計法 第47條의 歲計剩餘金處理規定에 의거 歲計剩餘金으로 缺損을 補填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本委員은...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 質疑하셨는데 政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豫算會計法 改正案을 國會에 제출했습니다. 歲計剩餘金이 發生하는 경우 糧穀證券의 元利金 償還에 償還할 수 있는 規定을 넣어서 豫算會計法 改正案을 國會에 제출했습니다.

○朴亨午委員 그래 糧穀證券이라는 것이 결국 國家의 債務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 짚으셨네요. 그자를 빨리 法을 改正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이제 됐습니까?

○朴亨午委員 네. 이상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洪熙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內務部長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部長官 李相淵 內務部長官 答辯올리겠습니다.

朴 實委員님 朴錫武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차례대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朴 實委員님께서 90年 綜合土地稅制가 도입

될 때 營業用附屬土地에 대한 稅率을 5%에서 2%로 引下함에 따르는 稅收減少推定額과 財政自立度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 實效稅率이 外國에 비해서 크게 낮은데 대한 견해와 課標現實化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營業用 建築物 附屬土地에 대한 稅率을 5%에서 2%로 引下함에 따른 稅收減少額은 620餘億원으로서 推計됩니다.

이것은 90年度의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總豫算 13兆4,000億원의 0.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地方財政自立度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綜合土地稅의 實效稅率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外國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課標를 每年 30% 내외로 引上 調整해서 課標를 일정 수준으로 現實化한 후에 그다음에 稅率體系도 아울러서 조정함으로써 實效稅率을 높일 계획으로 推進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이 課標現實化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每年 課標를 30% 내외로 引上 調整하는 것과 병행해서 課標現實化率에 平均화 작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다음 단계로 公示地價의 60% 수준을 課標로 올릴수 있도록 하면서 稅率의 體系도 병행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政府의 來年度부터 실시되는 7次 經濟社會 5年計劃에도 전반적으로 이런 바탕 밑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朴實委員님께서 司正活動을 위해 豫備費를 사용한 실적을 各 部處別로 물으신 가운데 저희 內務部에서는 司正活動을 위해서 豫備費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朴錫武委員님께서 內務部所管豫備費支出과 豫算轉用에 관해서 90年豫備費 중에 一般行政에서 28億5,200萬원을 特別辦公費와 情報費로 하고 그 다음에 治安行政에서 特別辦公費 10億6,300萬원 그리고 情報費로 22億480

萬원을 支出하는 등 特別辦公費와 情報費가 支出된 이유와 使用內譯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90年度 內務部の 豫備費 使用額은 總 189億9,200萬원으로서 그중 特別辦公費와 情報費는 61億1,900萬원입니다.

먼저 一般行政費중에 特別辦公費와 情報費는 28億5,200萬원으로서 그 使用內譯은 환경미화원, 街頭職業靑少年, 少年少女 家長 등 불우 근로자에 대한 年末防寒服 購入費가 19億1,000萬원 그리고 새 秩序 새 生活實踐 운동의 일환인 不法 駐停車 그리고 심야유형업소 團束推進費에 6億6,000萬원 그리고 光州民主化 運動補償委員會가 業務推進費를 위해서 1億5,000萬원 그리고 새마을 指導者大會開催經費 9,200萬원 그리고 國會議員補闕選舉 大邱西歐 忠北 鎭川 陰城 그리고 全南 靈光 咸平입니다. 이 補闕選舉經費 3,400萬원 등입니다.

그리고 治安行政費 중에서 特辦費와 情報費는 32億6,700萬원으로서 그 使用內譯은 犯罪의 採證活動費로 16億1,100萬원, 여기에는 給食費 交通費 資料蒐集費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防犯活動 警察官...

○朴錫武委員 長官!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이 32億6,700萬원 말입니다. 지금 犯罪 뭐라고요?

○內務部長官 李相淵 犯罪採證活動費입니다.

○朴錫武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一般豫算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 왜 犯罪採證을 위해서 쓰는 豫算에 미리서 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豫備費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內務部長官 李相淵 그렇습니다. 正常活動費이고 또 本豫算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것이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副總理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5月7日 特別談話 發表이후 그리고 10·13特別宣言이후 아시다시피 昨年에 治安需要가 增加되고 活動量이 增加되고 業務量이 많아짐에 따라서 追加되는 經費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蔡映錫委員 내일 質疑하는 데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새생활 새질서 運動은 各 그 部處가 豫備費를 많이 썼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 그런데 主管部處는 어디입니까? 國務總理室
입니까? 內務部입니까?

○內務部長官 李相淵 이게 政府의 國務總理室
에서 총괄을 하고 各 部處別로 따로따로 합
니다.

오늘날 各 社會病理現狀의 所管別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防犯活動警察官 士
氣對策費로 7億2,900萬원 여기에는 주로 支派
出所 一線要員들의 夜勤이 되기때문에 支·派
出所當 20萬원내지 50萬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交通警察官 交通團東 業務推進費가
4億8,500萬원 그리고 外勤搜查要員 教育經費
2億6,700萬원 戰·義警部隊士氣對策費 1億1,500
萬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經費를 豫備費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조금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90年度 前半期에 5·7特別宣言 그리고 90年度
後半期에는 犯罪와의 戰爭이 선포되고 또 國
會議員 補闕選舉 등 예측하지 못했던 經費所
要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豫備費중에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特別辦公費와 情報費가 많은 比重을 차지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不遇근로자
防寒服 購入 民生治安 事業費 등 대부분이
事業物量의 增加에 따른 또 새로운 狀況發生
에 따른 事業費의 性格의 豫算임을 이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90年度 저희 內務部의 豫備
費 中 特別辦公費와 情報費는 당면시책 추진
을 위해서 필요한 經費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적하신 말씀하신 가운데 安企部에의 轉出經
費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安
企部의 轉出經費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朴錫武委員님께서 89年 90年度에 豫備費로
街頭職業青少年들에게 방한복을 구입배부한 사
유와 內務部에서 집행한 사유, 그리고 앞으
로 중단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政府에서는 연말을 보내고 새해
를 맞을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街頭職業청소년 그리고 소년소녀 가
장, 광산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사회에서 소
외된 불우계층에게 방한복 등 위문품을 지급

해서 위로·격려하는 것은 이 지급방법에 있
어서 이들에게 보다 용기와 격려의 뜻을 효
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國家元首의 명의로
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豫算을 本 豫算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 다만, 昨年末의 어려운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關係部處間에 협의
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洪熙鈞幹事, 金塔泰委員長과 司會交代)

○朴錫武委員 長官! 그것이 昨年末이면 90年
末 인데 88年에도 했고 89年에도 했고 또
90年에도 했고 또 이제 今年에도 할 計劃이
아니겠습니까?

○內務部長官 李相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內務部에서 이 事業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보통 年末年始의 年末을 맞아서 時
間上의 촉박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市·郡·
區·邑·面·洞 등 一線行政組織을 통해서 전
달하기 때문에 여러 部處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內務部가 전달하기 위해서 었습니다.
그리고 今年度에는 이 事業을 추진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물으셨는 데 제가 本人의 생각
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豫算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社會相으로 보아
서 형편만 닿는다면은 지금 이 그늘진 곳에
서 어려운 일을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의
士氣를 북돋아주는 일은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 豫算 確保
는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豫備費에서 하기
보다는 아예 필요한 物量을 정해서 本 豫算에
서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今年에 지금은 豫算이 아직 확보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經濟企劃院,
保社部, 勞動部, 環境處 등 關聯部處와 協議
를 해서 이 方案을 檢討를 하겠습니다. 제
가 이 時點에서 今年에 또 이러한 격려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문제를 主觀的으로
결정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時期가 이런 문
제를 검토를 할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來年度 豫算에도 이 문제가 反映이 안
된, 지금 提出되지 않는 것은 꼭 유감스럽
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 範圍와 그
對象에 대해서는 적절히 反映을 하는 것이

옳다고 個人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錫武委員 長官! 그것이 지금 長官의 말
쓰과는 달리 저는 아까 質疑한 대로 中斷할
用意는 없느냐고 물었어. 中斷할 用意가
없느냐? 그런데 長官께서는 여러가지 社會的
要因으로 볼 때 그런 불우한 사람들에게 용
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豫算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견해를 달리해요. 지금 제가
88年末 大統領 贈物 配付計劃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道의 資料를 하나 가지고 있어
요. 그것을 보면 지금 不遇靑少年 내지는
참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준다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반대하
겠어요? 그것 잘 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
에도 그런데 이 意圖가 여기 지금 이 計劃
書를 보면 弘報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弘報를 하느냐 地域內 各種 弘
報媒體, 예를 들면 TV, 新聞, 라디오 등
을 활용해서 몇 月 몇 日 年末에 大統領께
서 不遇靑少年 이런 사람들에게 贈物을 준다
라는 것을 弘報를 하는 것이에요. 弘報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8年末 大統領 贈
物 傳達計劃을 報道資料로 만들어가지고 言論
社에 提供을 해라, TV·地方紙 및 라디오
를 통한 弘報를 展開해라 그래가지고는 나중
에 이제 88年末 大統領 贈物傳達 結果報告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報告를 하도록 되어있
는 거기에 보면 其他 添附物 그래가지고는
新聞스크랩 내지는 報道內容을 스크랩해서 해
라 올려라 그거야! 지금... 도대체 이 作業
이 불우한 靑少年들 아니면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참 몰래 도와주면서 용기를
주는 일이나 아니면 大統領의 治績을 과다하
게 弘報하자는 일이나에 대한 判斷을 하기가
어렵다 그거예요. 이런 일을 뭐하러 하느냐
그거예요. 이것의 문제는 그거예요 이것이
누구 것이에요? 國家와 國民의 稅金을 가지
고 마치 大統領이 혼자 선심 쓰듯 해서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長官의 견
해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內務部長官 李相淵 朴委員님께서 그런 지적
에 대해서 一線에서 行政을 하고 弘報를 하
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

로는 根本趣旨는 우리가 年末을 보내고 새해
를 맞을 때 이러한 불우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激勸事業은 社會的으로 民間에서 自發的
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볼 때 大
統領 名義로 또 政府次元에서 이러한 事業을
하는 것을 알림으로 해서 그런 社會氣風을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趣旨는 그
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 一線에서 그 趣旨가 좀
미숙해서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이 展示用
으로나 弘報用으로 돌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改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錫武委員 長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오
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그
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본 어느 古典의
책에는 누구를 도와 주고서 도와줬다라고 말
하면 그것은 無效랍니다. 내가 그런 글을
본적이 있어요. 도와주고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되지 도와줬네 도와줍네
하고 도와 주면 그것은 도와 주는 것 자체가
無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計劃하시고... 제가 지금 計劃書를 쭉
보니까 그야말로 展示行政이고 이것 뭐...

○內務部長官 李相淵 88年度 것입니까?

○朴錫武委員 88年度 것이에요. 그것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89年度에도 그대로 진행되
고 있고 아마 지금今年도 이렇게 또 진행
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빠른 일인데...

○內務部長官 李相淵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참작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래
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政府가
과연 國民이 내는 稅金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豫備費가 그것은 그냥 봐 두는
것이 아니고 國民의 血稅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는데 정
말 不遇靑少年 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
람에게 격려해 줄 필요있고 위로해 줄 필요
있고 도와줄 필요있어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一般會計에 넣어가지고 떳떳하게 執行을 해
요. 그것 弘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이
렇게 해서 豫備費에서 計劃도 없이 두었다가
豫備費에서 사용하면서 巨額이에요. 20億以上

이 巨額의 金額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이렇게 이제 은밀한 計劃을 내보내가지고 弘報를 해라 나중에 弘報한 結果物을 누구에게 보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公務員도 귀찮을 일이고 또 보면 方法도 다 있어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별 소리가 다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內務部長官 李相淵 잘 알겠습니다.

○朴錫武委員 이런 유치한 公文들이 官公署에서 굴러 다니지 않도록 長官께서 유의하세요.

○內務部長官 李相淵 잘 알겠습니다.

答辯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財務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部長官 李龍萬 財務部長官입니다.

먼저 李起彬委員님께서 稅收推計의 正確도를 높이기 위한 對策을 물으셨고 또 이 問題에 관해서는 朴錫武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質疑가 제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副總理答辯중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精確한 稅收推計는 財政運用과 각종 經濟政策에 대한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이 歲計剩餘金이 발생했던 主要原因은 歲入推計의 근거가 되는 巨視經濟指標의 豫測値와 그리고 實績値間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90년의 경우 豫算編成時에는 經濟成長率을 11.3%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成長率이 18.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歲計剩餘金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來年 92年 歲入豫算案을 編成함에 있어서는 關係機關과 협의해서 歲收推計의 전제가 되는 成長率등 巨視經濟指標 豫測의 正確性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經濟成長에 따라서 正常的으로 증가하는 歲入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歲入推計를 現實化해서 歲計剩餘金의 발생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보다 精確한 歲收推計와 그리고 租稅制度의 발전을 研究하기 위해서 租稅研究院의 設立을 추진하여 中長期的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李起彬委員님께서 이 問題에 대해서도 朴實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質疑가 계셨습니다. 이는 租稅收入의 決算절차와 관련하여 財務部 國稅廳·關稅廳의 歲入決算額과 收納額을 일치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答辯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豫算會計法 第43條에서 歲入歲出決算은 歲入歲出의 豫算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서 이를 作成하도록 規定하고 있고 租稅收入이 財務部所管 歲入豫算으로 編成 運用되고 있기 때문에 租稅收入의 決算도 財務部所管으로 作成하고 있습니다.

다만 實際 租稅收入의 徵收 收納은 國稅廳 關稅廳 등 徵收 機關別로 구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豫算會計法 第49條에 財務部長官은 歲入의 徵收와 收納에 관한 사무를 總括하고 各 中央官署의 長은 그 所管 歲入의 徵收와 收納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도록 되어 있고 政府組織法 第32條 3項 내지 5項에서 內國稅와 關稅의 賦課 減免 및 徵收를 管掌하게 하기 위해서 國稅廳 關稅廳을 財務部長官 所屬下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租稅收入의 收納에 있어서는 지난 20餘年間 慣例의으로 租稅 徵收機關인 國稅廳과 關稅廳所管의 收納額으로 計上 處理되어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朴錫武委員님께서 歲計剩餘金을 財源으로 하는 追更을 編成하기 위해서 稅收를 의도적으로 過少推計하는 것이 아니냐는 質問이 계셨고 또한 歲計剩餘金은 豫算會計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國債 등 元利金償還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동안 歲計剩餘金이 발생했던 主要原因은 조금전에 유사한 내용의 答辯을 드렸습시다. 이는 歲入推計의 근거가 되는 巨視經濟指標의 豫測値 그리고 實績値間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기인하는 것이고, 최근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커지고 開放化, 國際化됨에 따라서 國內外的 經濟 여건 변화를 사전에 예측해서 다음 해의 精確한 經濟 展望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政府가 의도적

으로 歲入 豫算을 過少 推計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財政證券의 이자 등 國家債務를 상환하거나 地方財政交付金을 추가로 정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잔여 재원은 追更의 歲入으로 활용하였습시다라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豫算會計法의 규정에 따라서 國家債務나 借入金의 元利金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副總理에 대한 보충 질의 答辯時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豫算에 計上하지 않고 양곡관리기금의 赤字補填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豫算會計法改正案을 國會에 현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答辯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國防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李鍾九 國防部長官입니다.

朴 實委員께서 質疑하신 '90年度 國防部所管 科目移用 移替額 253億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90年度 國防部所管 科目移用額은 253億3,600萬원으로서 이는 給食費, 人件費, 國家賠償金 등 法定經費의 부족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豫算會計法 第36條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서 주요 사유별 이용내용을 말씀드리면, 豫算編成後 糧穀代 告示價 引上에 따른 부족충당에 142億1,900萬원, 실 집행호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 충당에 59億1,000萬원 國家賠償金 高額化에 따른 國家賠償金 등 法定負擔金 부족충당에 52億700萬원으로 이는 諸法定經費의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朴委員님께서 全統교역에 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처음 監查院長께서 상세하게 答辯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 實委員께서 徵發地의 환매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賣却 承認하여 民願을 야기하고 4億4,000萬원의 國庫損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니다.

同件은 議政府 地域에 위치한 514彈藥庫 移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議政府市가 都市發展과 地域住民의 安全을 위하여 軍에다가 대체시설을 제공하고 國防部는 議政府市에 이 彈藥庫 敷地를 양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매를 제기한 民願人은 최초 議政府市長에게 환매 포기서를 제출하여 환매대상재산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國防部에서 議政府市로 양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訴訟結果 國家가 敗訴하게 되어 賠償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賠償額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아서 4億4,000萬원의 國庫追加 負擔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國家敗訴金額이 總 21億원이었으나 國防部 賠償金은 당시 1/4分期 豫算殘額 3億원 밖에 되지 않아서 재원염출을 위한 시일이 長期間 소요됨으로서 부득이 하게 遲延利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환매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는데도 賣却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議政府 地域에 있는 514탄약고 단 1件이었으며, 監查院 조치대로 關聯者 3名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과 세출의 문제는 우선 의형적으로는 세입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剩餘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도시부대는 대부분 自然綠地 혹은 公園用地 등으로 감정가격이 현 時價보다 월등히 낮으며 移轉地域부대는 대부분 산악지로 부지가 도시보다 추가 소요되고 토목 및 전기, 급수 인입공사와 시설공사 등 공사비가 과다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각시에도 군부대가 이전시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宅地開發 및 교육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감정가에 의거 매각케 됨에 따라 세입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다음 質疑하신 90年度에 首都圈에서 시행된 교외이전사업은 首都防衛司令部 海軍本部 空軍情報教育隊 特戰司令部教育團 空軍大學 空軍航空醫療院 그리고 美 龍山골프場 등 7개 사업으로 年次計劃에 의거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총세입은 2,028億원이고 총세출액은 2,023億원이며 이중 90年度의 세입은 725億원이고 세출액은 815億원

이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文化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部長官 李御寧 文化部長官입니다.

朴錫武委員님의 質疑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은 文化部에서 추진중인 역사적 표지판을 세우고 있는 사업의 추진현황과 또 文化部에서 月別로 文化人物을 선정해서 그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人物選定の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文化部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선정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사업의 효과와 그에 따른 경비는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역사 기념표식 설치사업에 대해 答辯드리겠습니다.

全 國土를 文化空間化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그동안 저희 部에서 추진해 온 실적을 말씀드리면 忠淸北道 忠州 彈琴臺에 于勒선생의 기념표식 京畿道 安山市에 星湖 李 灑선생의 기념표식 등 총 마흔한 분의 연구지에 표식을 설치하였습니다.

기념표식 설치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나를 세우는데 國費 300萬원과 地方費 300萬원 합쳐서 600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와는 별도로 이 달의 人物事業 등으로 民間들의 돈을 유치해서 金正浩의 出生地域이라든가 三陟 竹西樓의 松江詩碑라든가 이런 것을 今年에 다섯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朴錫武委員 民間資本입니까?

○文化部長官 李御寧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文化部에는 豫算이 없기 때문에 非豫算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달의 文化人物事業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文化部는 90年7月 秋史 金正喜선생을 선정한 이래 今年 11月 孤山 尹善道선생을 선정이제까지 17名の 文化人物을 선정해서 關係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作故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政治的인 것을 떠나서 순수한 文化人物이라는 것 그리고 이미 객관

적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들면 中·高等學校 教科書에 실릴 수 있는 분, 실린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그 달에 출생하셨거나 忌日인 경우 즉 특별한 연고가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합니다.

세번째는 각 文化團體와 企業人 등 民間이 참여하고 협조를 받아낼 만한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 네번째로 文化部와 傘下機關에서 이미 기존 計劃事業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많은 분, 다섯째 專門家와 그리고 각 言論機關 및 文化團體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여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쨌서 文化部에서 자의적으로 하느냐 하는 오해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순전한 非豫算 事業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文化部가 文益漸의 시배지를 文化遺跡管理費에서 文化遺跡事業으로 이미 豫算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8월에 하게 된다 하면 8월에 저희는 文化人物로 文益漸을 선정해서 商工部나 纖維協會에다 말해서 財政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선정하지 않으면 그 판단기준이나 財政을 받아들이는 것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적으로 文化人物을 선정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非豫算事業인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측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文化는 원래 이끼처럼 끼는 것이기 때문에 금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지표는 나타나는데 許 浚선생을 기념하는 달에는 許 浚선생의 묘소를 찾아뵈다든지 이 달의 文化人物포스터를 1,500부밖에 찍지 못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크다고 해서 民間人들이 거기에다가 자기 商標를 넣어가지고 1萬 5,000부를 찍게 되었다든지 대중매체인 娛樂日刊紙에서 이 달의 文化人物에서 자진해서 만화를 실고있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지표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今年 8월에 輿論調査에 의할 것 같으면 文化部가 펼치고 있는 이 달의 人物에 대한 事業을 알고 있는 사람이 90%인데 거기에 아주 좋다 보통이다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효과면에서 상당히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豫算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文化部는 잘 아시다시피 文公部와 나누어지면서 文化部가 90年度에 이미 책정된 豫算을 가지고 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事業은 전부 非豫算으로 해 왔습니다.

今年度에도 이 달의 事業計劃은 豫算에 計上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 豫算案에는 2億원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上程되어 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豫算은 마음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國民 輿論을 반영시키고 응색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또 朴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人物을 選定할까 합니다.

끝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사람을 어느 지역에서는 대단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또 老論 少論 얘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松江 鄭 澈선생의 경우 政治的으로는 黨派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視角을 달리 합니다마는 文化人物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歌辭文學에 鄭 澈선생이 第1人者라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생지에 혹시 그 후손들간에 아직도 黨派에 대한 문제 때문에 政治的 視角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교과서에서도 松江 鄭 澈선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靑少年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老論 少論같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視角도 있을 수 있지만 전체 國民의 視角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人物을 全 國民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가장 이상적이고 교훈성도 높고 문화 예술성도 높은 사람을 앞으로 계속 선정해서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이상 答辯 마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長官! 지금 41個의 표석을 문화 유적지에다 세운다 하셨는데...

○文化部長官 李御寧 51個所입니다.

○朴錫武委員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무슨 委員會가 있습니까?

○文化部長官 李御寧 이것은 文化財관리국 所管으로서 文化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各 地方에서 그 마을에서 이런 분을 세우고싶다 해서 地方費를 가져오면 저희가 補助金으로 國費를 300萬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文化部가 선정한다기보다 各 地域에 있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선정해서 文化部가 文化財管理局에서 豫算 事業으로서 그 항목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錫武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걸로보면 공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요즈음 우리 社會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을에서 태어난 분 우리 郡에서 태어난 분 우리 面에서 태어난 분에 대한 애착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 실지로 그분들이 全國的인 규모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런 역사 유적 인물로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經費를 누가 대고 文化部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차원은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文化部長官 李御寧 물론입니다. 이것은 道費나 地方自治團體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조정이 됩니다.

두번째는 저희 文化財管理局은 專門集團이기 때문에 專門委員들로부터 文化財委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文化部의 本部에서 하면 혹시 朴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文化財管理局의 專擔事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이 잘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이것이 地域利己主義나 또는 세우지 못할 분과 세워야 할 분들의 여러가지 선정에 의구심이 드신다면 91年度에 설치중인 기념표석과 그동안 전부 설치했던 내용을 書面으로

朴委員님께 提出코자 합니다.

○朴錫武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文化人物을 月別로 정하는데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신대로 自然 文化人物을 고르지 政治的인 것은 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先賢들을 보면 대체로 그 분들이 文化人物임과 동시에 政治的인 人物이고 정승 한 분도 있고 판서 한 분도 있고 다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이달에 孤山을 文化人物로 정했는데 孤山이야말로 아주 黨爭의 소용돌이 속에 유명한 政治人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文化部長官 李御寧 동감입니다마는 한가지 덧붙이면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政治的인 업적 보다는 文化的인 업적이 남습니다.

첨성대 같은 것을 별을 관측했던 제사를 지냈던 곳이었던... 지금은 文化的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히...

○朴錫武委員 그것은 長官 생각이시고 하나 덧붙인다면 文化的인 人物로 그달의 文化人物이라 해가지고 정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事業 主체가 저는 官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官이면 안됩니다. 괜히 政府 宣傳이나 하고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주체를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그런 學術的인 文化的인 그런 團體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人物이 그달에 설정되면 그 분의 무슨 장점 그분의 철학세계 학문세계 같은 것을 國民에게 알릴 수 있는 세미나를 한번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작업들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文化部에서 하면 안돼요. 官에서 하면 안됩니다.

○文化部長官 李御寧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文化團體라고 말했는데 지금 民間에는 각 기념협회가 다 있습니다. 秋史면 秋史를 기리는 기념협회가 있고 大學에도 研究所가 있습니다. 許浚의 경우에는 한양대학 醫大를 중심으로 해서 그 韓醫大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내보면 文化部와 文化部 관련 기관이 50% 나머지 50%가 事業을 주관하는 것이 民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蔣英實을 할 경우에는 蔣英實이 그달로 끝나지

않고 蔣英實을 국악원에서 무용이나 곡을 작곡하면 1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豫算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골프장을 文藝振興基金으로 運用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홀」 이름도 전부 文化人物들로 개체해서 1「홀」 2「홀」 하지않고 蔣英實 「홀」이라든지 또는 文益漸「홀」이라든지 해서 골프 치러 온 분들도 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農林水産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水産部長官 曹京植 農林水産部長官입니다.

朴 實委員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財政投融資特別會計의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을 農地管理基金으로 移用하고 농업기계화 자금과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農漁村發展基金으로 移用하였는 바 이는 豫算總則 第8條에 정한 移用대상 경비가 아닌데도 移用한 것은 違法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副總理께서도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農漁村地域開發基金이 농업기계화자금 및 후계자육성기금은 1990年度 豫算總則 第8條에 정한 이용대상 기념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1990年度 豫算이 확정된 이후에 농수산업의 구조개선과 농어촌 발전을 촉진시키기위해 1990年4月7日 國會에서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과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의 制定으로 農地管理基金法이 의결되었으며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의 制定으로 農地管理基金이 신설됨에 따라서 同法 附則 第12條 規定에 의거 당초 農漁村地域開發基金出捐金으로 計上된 농지구입자금 1,000億원은 農地管理基金에 대한 出捐金으로 移用하였으며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의 制定에 따라 기존의 農漁村地域開發基金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농업기계화 촉진기금 및 수산진흥기금 등 4個 基金이 農漁村發展基金으로 통합됨에 따라 同法 附則 第3條의 規定에 따라서 당초 各 基金에 計上된 出捐金과 融資金을 農漁村發展基金으로 移用하게 된 것임

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基金의 移用이 1990年度 豫算總則에 정한 이용대상 경비는 아닙니다.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등 關聯法이 豫算編成 이후에 制定되었고 同法 附則에 1990年度 當該豫算은 신설되는 基金에 計上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移用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商工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商工部長官 李鳳瑞 商工部長官 答辯드리겠습니다.

朴亨午委員님께서 副總理께 質疑한 내용중에 農水産物輸入에 따른 貿易特計資金의 규모와 同 資金이 農水産物輸出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貿易協會가 운용하고 있는 貿易特計資金의 조성은 외화획득용 원료와 관수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액의 0.15%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년에 조성된 貿易特計資金 중에서 농수산물 수입에 의해 조성된 금액은 48億원으로서 전체 조성액의 8.8%에 해당했습니다.

貿易特計資金은 품목별 지원보다는 우리나라의 貿易振興을 위하여 전반적인 해외시장개척이나, 通商對策活動支援, 貿易情報의 보급, 대외홍보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貿易特計資金의 運用은 世界 農水産物市場의 조사 및 農水産物 輸出增大方案을 위한 사업분야에도 지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農水産物輸出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무역특제자금의 農水産物 수출부문에 직접 지원이 되도록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農水産物流通公社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和蘭의 한국유통분배센터 건립에 貿易特計에서 7億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 바 있음을 報告드립니다.

○朴亨午委員 長官! 90年 현재까지 얼마 特計資金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商工部長官 李鳳瑞 제가 그 統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朴亨午委員 合計가 548億이예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그것이 아마 90年 한해의 것일 것입니다.

○朴亨午委員 그것이 한 해가 아니라 여태까지의 總計라니까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特計는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朴亨午委員 많으면 무엇 했어요? 事業했다고 했는데 무슨 事業 했느냐고요. 그동안에 무슨 事業 했느냐고요. 和蘭에 지금 7億 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農水産物分野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亨午委員 農水産物分野에...

○商工部長官 李鳳瑞 農水産物分野에 대해서 그것은 특별히 지적해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7億원 외에 개별적인 事業으로서 한 것은 없습니다.

○朴亨午委員 없는데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全般의인 문제 農水産物 輸出에 관한 정보라든가...

○朴亨午委員 長官! 물어보는 말만 答辯을 하요.

關聯對外通商協力이예요. 管理要綱이 農水産物分野에 관련된 對外通商協力, 海外市場 개척, 輸出商品 品質向上 및 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90년까지에 548億이 조성이 되었는데 可視의으로 무슨 事業이 되었느냐 그것이에요. 한가지도 안했잖아요. 그것 안했으면 안했다고 시인하세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글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農水産物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一般的인 海外情報 수집 및 거기에 대한 정보를 業界에 알려주는 事項 등등은 農水産物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農水産物 하나만을 메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事業은 이번에 하려는 事業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朴亨午委員 그렇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農漁民의 눈물로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轉用해 썼다 이말이에요. 長官

이 혼자 썼다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國家를 위해서 썼는데 農産物關係하고는 관련이 안된 輸出事業에 썼다 이말이에요. 다른 事業은 잘 되어 있고 農民은 죽게 되어있다 그것인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答辯을 해보세요.

○商工部長官 李鳳瑞 앞으로 아마 農水産物 輸出이 전체 輸出에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農水産物 輸出에 대해서는 비단 農林水産物뿐만 아니라 商工部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輸出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할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朴亨午委員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逆調現象 아닙니까. 輸入은 많고 輸出은 적으니까요. 잘해주세요.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動力資源部長官 答辯 해주시기 바랍니다.

○動力資源部長官 陳稔 動力資源部長官 答辯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實委員께서 오늘附로 일부 注油所에서 引上된 揮發油價格問題와 관련해서 談合 引上에 대한 政府對策 그리고 價格自律化 시책의 보완 등에 관해서 副總理와 저에게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一括해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政策에 책임을 지고 있는 長官의 입장에서 오늘附로 일부 揮發油價格이 올라가서 揮發油를 쓰는 분들에 부담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揮發油價格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난 7월에 저희가 油類價格 調整할 때 原油價格은 배럴當 17弗70센트 그리고 換率은 730원을 전제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이후 原油價格은 18弗수준으로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換率이 730원 예상에서 현재 對顧客 賣渡率 기준으로 753원 그래서 23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연간으로 봐서 原油와 石油製品을 약 100億弗 輸入합니다마는 換率이 10원 올라가면 年間 1,000億, 20원 올라가면 年間 2,000億원에 상당하는 換損失負擔이 생기는 이유들로 해서 일부 精油社의 揮發油 가격조정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朴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談合이나 관련되는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公正去來法上에 의해서 제재가되고 단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公正去來法上으로는 불공정한 또 부당한 共同行爲라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談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부당한 동조적인상이라 해서 어느 事業主가 가격을 올렸을 때 정당한사유 없이 뒤따라서 같이 올리는 것은 法 節次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談合 내지는 부당한 동조적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公正去來當局에 의해서 조사되고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모처럼 저희가 추진하는 일부 油價自律化施策이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消費者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와 같은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처럼 시작하는 價格自律化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流通段階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주유소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를 했고 앞으로 2年後에는 거리제한은 전부 없애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리제한을 전부 철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委員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不動産 투기현상과 특히 土地超過利得稅로 인한 불필요한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政府의 政策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주유소 거리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때는 이로 인해서 유흥지에 주유소 건립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체 經濟運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반을 줄였고 2년정도의 經過規定을 갖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消費者의 選擇權을 保護하기 위해서 또 精油社가 品質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른바 商標表示制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行政指導하고 있고 年內에 經濟企劃院公正去來當局과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規定에 의해서 商標表示制 關聯 告示를 확정해서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동시에 價格이 自律화된 品目에 대해서는 현재 제품 수입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터놓고 운용을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價格自律化 施策이 가격과 對顧客서비스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은 첫째로 價格 自律化가 된 9月1日 이후에 우리 貿易收支 赤字를 반영해서 換率이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간 데 따르는 그런 부담과 수십년동안 價格管理體制下에서 운영되었던 관행이 自律化되어가는 데는 일정한 經過規定이 소요된다는 이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대만큼 價格自律化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動力資源部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施策을 보완적으로 또 조기에 정착시켜 나감으로 해서 서비스와 價格競爭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引下要因이 있을 때에는 適時에 揮發油價格이 인하되고 이를 통해서 精油會社들의 體質改善과 消費者 선택의 범위가 넓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朴錫武委員님께서 昨年度 탄광지역 수해발생시에 災害對策豫備費에서 지원하지 않고 왜 一般豫算에서 轉用했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原則적으로는 朴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허용된다면 재해대책에 필요한 경비는 災害對策豫備費에서 支出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작년 9월에 발생한 재해는 원천 규모가 컸고 災害對策豫備費로서 전부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各部處別로 既定 豫算에서 活用할 수 있는 部는 各급적 既定 豫算에서 活用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저희 動力資源部의 경우에는 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民間에 대한 資本補助豫算額 중에서 豫算當局에 의해서 예산절감으로 묶여져 있는 豫算이 6億8,000萬원이 있었습니다. 災害가 생겨서 지원하는 자금을 저희 자체 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豫算當局과 협의해서 豫算節減額을 해제받아가지고 복구비로 지원하는 目間轉用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재해대책 豫備費의 支援를 받도록 關係當局과 협력을

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유가인상에 대해서 한 말씀 못 했는데요 長官께서 아까 公正去來法上에 독과점품목이 아니냐 지금 현재 油公도 보면 石油公社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石油事業은 지금 전부 민간인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基幹産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석유가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政府가 지금 예를 들어서 石油價格 自律化를 하자마자 곧 이어서 가격인상을 하는데 아까 長官 말씀대로 換率 10원 인상에 年間 1,000億 정도의 부담이 간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계산상 맞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石油備蓄基金이 얼마입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稔約 4兆원 정도입니다.

○崔鳳九委員 그 石油事業備蓄基金은 그 基金設立目的 자체가 석유가격이 갑자기 오른다는가 내린다는가 할 때 政府가 그 가격을 완충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써가지고 불가인상요인이라든가 經濟安定을 기해야 될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石油業者 몇 사람의 이익을 앞세우는 動資部行政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動資部長官께서 품질표시제, 상표표시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품질표시가 붙었다손치더라도 지금 動資部에서 石油基準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예를 보면 휘발유면 휘발유 석유면 석유가 품질고급화를 내세우면서 가격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하고 나서 며칠 있으면 또 과거의 저급품하고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석유 품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감고 아웅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품질표시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석유 쓰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유독 휘발유 값을 인상하는 것은 政府에서 예를 들어서 特別消費稅를 稅率調整을 해서 政府歲入을 잡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휘발유소비를 억제

한다든가 과소비 풍조를 추방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석유회사가 휘발유 값을 일시에 7%나 8% 인상을 시켜가지고 國民經濟에 압박을 주고 또 휘발유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價格自律化가 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산업용연료 아닙니까. 방카C油라든가 가정이 지금 월동기가 닥쳐가지고 난방용 등유 경유 이런 부분인데 이런데 대해서 까지도 곧 인상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行政指導를 할 수 있습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崔委員님 말씀하신 品質問題는 저희가 石油類品質檢査所를 통해서 계속 品質檢査를 하고 있고 또 자기상표표시제가 되면 精油社間에 자기 상품의 판매를 넓히기 위해서 品質과 價格競爭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崔鳳九委員 長官! 그런데 商標標示制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精油社가 注油所에다가 자기 회사 상표를 붙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름은 물인데 어떻게 商標를 붙이겠습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商標를 표시하게 되면 그 商標가 붙은 注油所에서는 그 商標가 붙은 會社製品에 대한 價格과 品質에 대해서 다같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商標가 안붙었다고 해서 현재 품질책임을 商工部에서 질 수가 없습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아닙니다. 현재도 품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崔鳳九委員 문제는 商工部에서 휘발유면 휘발유 경유면 경유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을 商工部에서 시험해서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商標가 표시되든지 안되든지 政府가 요구하는 규격에 대해서는 精油社가 만들어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하등 도움이 될 것도 없고 商標表示는 이미 注油所마다 간판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유공이면 유공 쌍용이면 쌍용 경인이면 경인이 붙어 있는데 소비자한테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하면 商標를 표시하든

品質表示를 하든 그것은 소비자가 아랑곳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가격인상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動資部에서 價格自律化措置를 시키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뜻이 가격인상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備蓄基金은 어디에 썼느냐고 하면 4兆원이 넘는 備蓄基金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저희가 지금 自律化하지 않고 관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品目이 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産業用 주원료인 방카 C油하고 대부분 大衆交通用으로 쓰이고 있는 경유는 현재 政府가 계속 管理價格體制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면에서는 현재 전반적인 引上要因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國民의 생활과 物價安定 次元에서 방카 C油와 경유 가격은 월동기에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引上要因이 생겼을 때 委員님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의 경우 引上要因이 생겼을 때 이것을 石油基金으로 보전하는 것이 좋으나 아니면 휘발유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절약효과도 같이 유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하는 것은 보시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動資部에서는 石油備蓄基金이 그동안 징수된 것이 4兆5,000億원 상당합니다마는 그동안 대체에너지개발 또 에너지소비절약 또 大單位透油管建設 이런 데에 쓰고 현재 저희가 가용한 자원은 約 8,000億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휘발유 같이 특히 최근에 보면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휘발유소비가 每年 35% 40% 늘어나는 상태에서 휘발유가격의 引上要因이 있는 것까지 그런 基金으로서 補填을 할 것이나 하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저희는 國民의 생활과 産業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油種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휘발유같은 것은 소비자가 引上要因을 부담하도록 해서 소비를 절약하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關聯施策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鳳九委員 長官 말씀도 제가 일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長官 말씀 중에서 換率이 10원 인상되면 1,000億의 결손이 난다고 했지요?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年間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그렇다면 그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全體 油類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을 텐데 長官 말씀은 전체 油類價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이것은 말씀이지요. 지금 換率이 10원이 올라가면 年間으로 1,000億이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다만 730원에서 753원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또 이번 월동기 성수기를 지나면 原油價格이 17弗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것인지 안떨어질 것인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石油儲蓄基金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崔委員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방카 C油나 경유가격은 월동기간 동안 조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휘발유까지도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政府가 石油基金이나 이런 것으로 보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휘발유같은 소위 消費性油類에 대해서는 가격에 그대로 반영시키도록 해서 소비절약까지도 같이 유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이해를 했는데요. 앞으로 월동용 말하자면 가정용 난방용 유류라든가 앞으로 産業用油類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動資部에서 가격을 조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상하지 않게끔...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월동기는 넘어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월동기는 언제까지 봅니까?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3月末로 알고 있습니다.

○崔鳳九委員 來年 3月末까지는 그 가격은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그렇습니다.

○崔鳳九委員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動力資源部長官 陳 稔 이상으로 答辯을 마칠 것입니다.

○委員長 金瑢泰 다음은 保健社會部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部長官 安弼濬 保健社會部長官입니다.

朴錫武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께서 먼저 90年度決算과 관련해서 豫備費에서 충당되어야 할 災害對策費가 社會福祉에서 전용되고 그 중 일부가 불용된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年度豫算 중 社會福祉分野 豫算 일부가 災害對策費로 전용되었으나, 이는 90年9月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생계구호 등을 위해서 우선 불용이 예상되는 豫算을 사용하고 부족분을 豫備費로 사용하는 豫算執行上의 관례에 따른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轉用 充當된 災害對策費 중에서 不用額이 발생한 것은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위해서 재해 직후 市·道에서 파악 보고한 피해액을 근거로 우선 豫算을 책정하였으나 집행시에는 피해액을 정밀 조사하여 지원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朴委員님께서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예산중에서 災害對策費로 轉用한 것과 관련하여 豫算策定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90年度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지원 예산은 89年度 지원인원인 41萬8,000名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90年度 생활보호대상자 정밀조사결과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자 숫자가 많이 감소되었고, 특히 90年度에는 農漁村 綜合對策의 일환으로 面地域 영세농가의 자녀에 대해 실업제고교까지 학비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90年度 實支援 人員이 35萬8,000名으로 대폭 감소되어 豫算上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 朴委員님께서 정신질환 시설, 장애인 시설 등 社會福祉施設補助金이 매년 불용되는 이유와, 社會保障費 不用額 71億1,200萬 원 중에서 98%가 其他 社會福祉事業費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정신질환 시설 등 社會福祉施設의 運營費補助金 중에서 不用額이 발생한 이유는 社會福祉施設을 신속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한 一部

社會福祉 法人에서 부지매입 등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運營費 등이 남았으며, 또한 18億7,500萬원이 남은 보육사업의 경우도 90年1月부터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키로 계획하였으나 전환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不用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社會保障關聯 豫算중 기타 社會福祉事業에서 不用額의 대부분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社會保障 豫算 9,655億 중에서의료보장 예산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不用額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중에서도 3,573億인데 영세민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아동, 부녀복지 등 다양한 福祉事業일뿐 아니라 豫算執行의 주체가 전국의 市·郡·區와 사회복지시설이 되기 때문에 69億7,200萬원의 不用額이 여기에서 발생하여 社會保障豫算不用額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당초계획과 크게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朴錫武委員 長官! 시간이 없으니까 答辯을 요구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災害復舊費같은 것은 그야말로 豫備費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社會福祉費를 轉用해 가지고 災害復舊費에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더구나 그런 것들이 轉用豫算이라는게 大統領公約事業같은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선심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보입니다. 지금 豫算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구나 지금 保健社會部에서는 豫算이 부족하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費로 늘 豫算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 하면서도 이렇게 轉用도 하고 또 다른 데서 쓰고 있고 이런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세심하게 豫算運用을 하세요.

○保健社會部長官 安弼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瑢泰 다음은 公報處長官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公報處長官 崔昌潤 公報處長官입니다.

朴錫武委員님께서 自由總聯盟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90年度 國庫補助金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이제 國庫補助金을 중단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長官의 견해는 무엇인가를 質疑하셨습니다.

韓國自由總聯盟의 설립목적은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自由民主主義를 옹호,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지금까지 민간선도단체로서 나름대로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의 視角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1989年4月1日 종전의 반공연맹을 해체하고 韓國自由總聯盟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당시 與小野大 狀況下에서 與野가 함께 自由總聯盟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여 주셨고 朴錫武委員님께서서는 당시 文公委員이셨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聯盟은 그 조직이나 활동성격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自由總聯盟의 주된 활동은 과거와는 달리 교육홍보 활동과 국제활동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에게 自由民主主義體制와 시장경제 우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확신감을 심어 주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같은 기본활동 방침에 입각해서 90年度 國庫補助事業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教育弘報活動事業으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自由民主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는 研修教育을 실시했고 自體 事務局 要員을 대상으로 연수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념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 활동 및 6·25 第40주년 계기 자유수호 결의대회, 남북자유왕래 실현, 민족대행진대회 등 각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으로 國際活動事業으로 전세계 124個國이 가입한 世界自由民主聯盟의 활동과 아시아·太平洋自由民主聯盟 活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世界自由民主聯盟에 年 2萬弗,

亞細亞·太平洋自由民主聯盟에 年 1萬弗, 執行委員會에 2,000弗의 國際分擔金을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本部 및 支部組織運營을 위한 人件費와 事業管理費에 충당 집행해 왔습니다. 이는 同 聯盟活動維持에 필요한 최소한의 經常管理費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朴錫武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시대착오적인 사상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北韓 또한 유엔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對南態度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징후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를 수호하려는 의식이나 행동이 다소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 또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時代感覺에 맞지 않는 구호 등을 이용한 플래카드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行政指導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純粹民間團體인 自由總聯盟의 活動財源이 國庫補助金보다는 自體財源으로 충당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政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財政自立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國庫補助金支援은 부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朴錫武委員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제가 質問을 하면서도 그 法을 만들 때 특히 野黨에서는 강력히 지금 速記錄을 보면 그당시 제가 주장했던 얘기를 오늘도 제가 점검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法案을 小委員會에서 審議할 때 우리 보통 國會의 관례가 小委員會에서 審議할 때는 速記錄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法案을 審議하는 과정에서도 하여튼 앞으로 國庫補助가 없다는 그런 原則下에 이 法은 결국 새로 제정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 없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年째 지금 그것을 계속 그것도 적지 않은 돈

이 아니라 20億 이상을 지금 계속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來年度 豫算을 보니까 來年度에도 公報處쪽에서 20億을 計上해 놓고 있어요. 20億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좋은 일만해도 참 國民의 稅金을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長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 각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못된 짓 많이 하는 團體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하튼 하루 속히 自立하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은 今年度 豫算審議과정에서 來年度 豫算은 반드시 削減해야 된다 라는 저희 黨의 입장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長官께서는 어떤 行政指導를 통해서 간에 그것이 自生的인 또 社團法人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會費 내 가지고 活性化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公報處長官 崔昌潤 아까 말씀드린 대로 自體財源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도 그렇고 自由總聯盟에서도 고심하는 事項이고 朴委員님 지적하신 事項에 대해서 全的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盧武鉉委員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長官! 野黨이 自由總聯盟을 참 싫어한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소위 自由總聯盟에 돈 준다는 것을 오늘이 시간만이 아니고 대단히...

○文峻植委員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盧武鉉委員 왜 그러세요. 그것은 長官이 答辯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答辯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하여튼 野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쪽 일관된 입장인 것은 아시지요? 어떻게습니까? ○公報處長官 崔昌潤 民間團體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여튼 全國民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全的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게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느냐

자꾸 國際情勢 南北情勢 얘기 판에 박힌 얘기 오늘 長官 答辯을 들으니깐 89年度에 國政監査에서 答辯했던 것 그 다음 答辯했던 것 똑같습니다. 다시 質疑할 필요가 없어요. 速記錄 그냥 가서 速記錄만 읽어보고 와서 이 答辯만 나오겠구나 하면 되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野黨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것이 이 團體의 문제이고 이 團體에 주는 補助金의 問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團體의 목표가 政治的 目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野黨이 전부다 容共團體나 이것 정말 經濟企劃院長官께서도 이것 신경 정말...

이제 세상이 달라져 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안 그러면 野黨 싹 밀어내 버리든지 다시 탱크를 갖고 하든가 안그러면 이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場內騷亂)

○委員長 金瑢泰 盧委員 質疑 끝났신 것이지요?

○盧武鉉委員 예.

○委員長 金瑢泰 長官 내려가세요.

○朴英淑委員 長官께 하나 質疑하겠는데 自由總聯盟이 民間團體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公報處長官 崔昌潤 民間團體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글썽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國庫補助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하여간 그 團體가 民間團體라고 강조하셨지요?

○公報處長官 崔昌潤 社團法人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기관 말고 같은 형태의 어떤 團體에게 그런 國庫支援을 하고 있습니까?

○公報處長官 崔昌潤 저희 公報處傘下에 있는 團體로서는 自由總聯盟이 國庫支援이 나가있고 그 외에 다른 部署에 있는 團體는 어떤 團體는 어떤 團體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團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여러 團體에게 그런 거액 20億

이라는 거액을 주는 團體가 우리나라에 몇 團體가 있습니까?

○公報處長官 崔昌潤 다른 部處에 있는 傘下 團體의 사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파악을 구체적으로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朴英淑委員 文公傘下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公報處長官 崔昌潤 예.

○朴英淑委員 그러면 副總理께서요 내일 資料로서 우리나라의 民間團體치고 지원받는 民間 團體 리스트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金額까지.

○委員長 金瑢泰 政府側의 答辯이 모두 끝났습니다. 委員님 여러분 또 國務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盧武鉉委員 資料要請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瑢泰 서류로 제출하셔도 되지 않아요. 자로는 서류로 제출하셔도 되니까 꼭 말로 안하더라도... 서류로 하세요.

○朴錫武委員 지금 제가 質疑한 것 중에 總理를 상대로 한 質疑가 네 個가 있고 安企部 所管豫算에서 質疑한 것 있어요. 이것 지금 하나도 答辯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委員長 金瑢泰 이젠 나중에 시간날 적에 議論을 하십시오. 與野間에 議論을 하자구요. 協議를 하자구요.

○朴錫武委員 議論을 할 수가 있어야... 제가 그래서 애초부터 아까 總理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金瑢泰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의하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決算 다룰 적에는 總理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朴錫武委員 그것은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

○委員長 金瑢泰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豫算審議를 할 적에 安企部長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國務總理도 마지막에 일괄해서 答辯하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때 答辯하도록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朴錫武委員 그러면 내가 委員長께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아마 제 質疑 내일 速記錄이 나오잖아요? 그럼 專門委員이 체크를 해 가

지고 總理가 答辯할 분야 또 다른 분이 答辯할 분야를 반드시 여하튼 이번 決算審議過程에서 答辯할 수 있는 조치를 委員長이 해주세요.

○委員長 金瑑泰 決算審議過程이 아니고 豫決委活動期間중에...

○趙洪奎委員 방금 委員長이 말씀하신 중에 豫算다를 때에 國務總理가 一括答辯한다는데 與野幹事間에 합의했습니까?

○委員長 金瑑泰 예.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國務總理를 상대로 一問一答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어떻게 해서 일괄해서 答辯한다고 일방적으로 發表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委員長! 그것 중요한 문제예요.

與野間에 합의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예요?

○委員長 金瑑泰 내일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議事進行은 끝났습니다.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趙洪奎委員 委員長! 말씀 들어봐요. 答辯을 분명히 해야지... 議事進行으로서 분명히 말씀했지 않아요? 與野間에 幹事合意 했느냐고요?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 그러세요.

○委員長 金瑑泰 그런 관행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趙洪奎委員 관행은 당신들 관행이고 與野幹事間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법이요. 法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國務總理가 어떻게 해서 일괄해서 答辯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法的根據로 一括答辯하는 것이냐고요?

○委員長 金瑑泰 第4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1月8日 午前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1時 散會)

○出席委員

金 瑑 泰	權 達 洙	權 海 玉
金 瑾 洙	金 佑 錫	金 仁 基
金 長 淑	金 晉 榮	金 洪 萬
魯 興 俊	柳 昇 珪	文 峻 植

朴 昶 秀	朴 承 載	徐 相 穆
申 榮 國	申 五 澈	安 榮 基
吳 景 義	李 光 魯	李 肯 珪
李 起 彬	李 李 雄	李 在 淵
林 茂 雄	林 仁 圭	鄭 在 熙
趙 富 英	趙 榮 圭	洪 熙 文
黃 哲 秀	金 璉 錫	金 榮 度
金 台 植	盧 武 鉉	柳 暖 相
朴 錫 武	朴 實 載	朴 英 石
朴 亨 午	李 敬 載	張 英 石
鄭 祥 容	趙 洪 奎	蔡 映 錫
崔 鳳 九	朴 進 球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宗 鎬	徐 廷 華	辛 卿 植
金 德 圭	金 元 基	金 正 吉

○國會事務處參席者

事 務 總 長	朴 相 文
立 法 次 長	金 鍾 喆
行 政 次 長	柳 鍾 卓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吳 世 玟
立 法 審 議 官	張 旭 相
立 法 審 議 官	姜 英 昭

○出席國務委員

副 總 理 兼 經 濟 企 劃 院 長 官	崔 瑛 圭
副 總 理 兼 統 一 院 長 官	崔 浩 中
內 務 部 長 官	李 相 龍
財 務 部 長 官	李 金 洪
法 務 部 長 官	李 鍾 九
國 防 部 長 官	尹 亨 寧
教 育 部 長 官	李 御 哲
文 化 部 長 官	朴 哲 彥
體 育 青 少 年 部 長 官	曹 京 植
農 林 水 產 部 長 官	李 鳳 瑞
商 工 部 長 官	陳 李 稔
動 力 資 源 部 長 官	李 安 鎮
建 設 部 長 官	安 弼 弼
保 健 社 會 部 長 官	崔 秉 寅
勞 動 部 長 官	林 宋 彥
交 通 部 長 官	宋 李 衍
透 信 部 長 官	李 金 權
總 務 處 長 官	崔 昌 潤
科 學 技 術 處 長 官	
環 境 處 長 官	
公 報 處 長 官	

○出席政府委員

國家報勳處長	閔	庚	培
外務部次官	柳	宗	夏

○監査院參席者

監査院長	金	永	駿
------	---	---	---

○法院參席者

法院行政處長	安	又	萬
--------	---	---	---